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57-14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0년 연구보고서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21. 4.

http://kostat.go.kr/sri

9 772288 116605 08
ISSN 2288-1166(Print)
ISSN 2733-4120(Online)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2020-01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진유강 · 박영실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통계개발원(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RI)은 2006년에 개원한 이래 국내에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통계・조사 방법론의 발전과 데이터기반 정책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RI는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 즉 혁신에(革) 기반한 실용적인 「팀연구」를 통해서 국가통계・데이터과학의 미래를 밝히고자(光) 노력하였습니다.

SRI의 「2020년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혁신연구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설계 연구를 비롯해서 「데이터기반 인구・사회・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혼인・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심층 분석,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지표 체계구축, 그리고 SDG를 활용한 남북한 통합통계 방안 등입니다. 또한 2020년 2월에 출범한 「SDG 데이터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현황 점검과 SDG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통계・데이터과학・조사방법론 분야에서는 「데이터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방법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적용 등 실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조사표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를 비롯해서 「조사표 인지실험」을 적용한 국가통계의 품질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을 국가통계에 활용하고자하는 기초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혁신 방법론」의 새로운 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원 15주년을 맞는 SRI는 본 연구보고서가 증거기반정책 입안자의 데이터 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 생산자의 혁신적인 조사방법론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RI가 「국가통계 싱크탱크」로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도약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2020년 연구보고서」를 위하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 연구진과 대내외적으로 협력·공동연구에 참여한 민·관의 연구자들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1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글로벌 SDGs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현황 ····· 3

제1절 글로벌 보고체계와 주요 행위자 ····· 3

제2절 국제기구별 SDGs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현황 ····· 9

제3절 SDGs 데이터 제공 및 관리 해외 사례 ····· 14

제4절 주요 시사점 ····· 20

제3장 SDGs 국내 데이터 제공 현황 ····· 22

제1절 국내 데이터 수록 현황 ····· 22

제2절 국내 데이터 제공 및 관리 현황 ····· 44

제3절 주요 시사점 ····· 49

제4장 SDGs 데이터 제공체계 구축 방안 ····· 50

제1절 제공 중인 자료의 관리 방안 ····· 50

제2절 미제공 자료 관리 방안 ····· 54

제3절 자료제공 거버넌스 구축 방안 ····· 58

제5장 결론 ····· 60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60

제2절 연구의 함의 ····· 61

참고문헌 ····· 63

부 록 ····· 65

Abstract ····· 105

요 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과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의 SDGs 데이터를 국제기구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유엔의 글로벌 SDG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제공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247개 지표 중 130여 개의 지표에 국내 데이터가 수록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약 100여 개의 지표에는 아직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목표별로도 제공률에 차이가 있어 3번(보건), 7번(에너지), 9번(산업), 15번(육상생태계) 목표에는 자료 수록 비율이 높은 편이나, 5번(성평등), 10번(불평등), 11번(도시), 14번(해양생태계), 16번(평화·제도) 목표에는 자료 수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현황 조사 결과, SDGs 지표 소관부처는 24개로 지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소관부처가 미제공한 자료들의 경우, 데이터의 생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기생산된 자료가 국제기구가 제시한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제기구에 자료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SDGs의 데이터 수록 비율을 높이고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자료제공을 위해 자료제공 방식을 3가지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미제공 자료에 대해서는 유사통계, 대체지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처별 지표 담당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SDG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표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지표의 개선 개발 및 이용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시민사회와의 협업 방안도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 SDGs, 데이터, 모니터링, 거버넌스

제 1 장

서 론

2015년 9월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전 분야의 발전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는데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및 통계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SDGs 이행점검은 국제(glob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양질의 신뢰할 만한 세분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SDGs 세부 목표에 각국의,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강화를 통해 데이터의 가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포함될 정도로 전례 없이 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SDGs 목표 체계 내에서 명시된 데이터와 통계청의 높은 위상과는 달리 실제 각국의 SDGs 이행 과정에서 지표별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등은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SDGs 수립 초기에 국가별 목표 및 세부 목표, 지표 체계를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것과 달리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관리에까지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분산형 통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의 지표 데이터가 통계청 이외의 통계 작성기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승인통계 이외 정책 자료를 출처로 하는 경우도 많아 통계청이 자국의 SDGs 데이터 총괄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등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유엔에서는 각국 통계청을 글로벌 지표에 대한 책임 기관(National Focal Point, NFP)으로 지정하고, SDGs 지표 관리를 위한 조정(coordination)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또한 2017년 유엔으로부터 SDGs 글로벌 지표에 대한 국내 데이터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SDGs 데이터에 대한 총괄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간 통계청을 중심으로 지표 총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왔으나 한국 역시 분산형 통계제도에 따른 여러 제도적 제약 사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DGs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SDG 글로벌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 데이터 제공 현황을 총괄적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SDGs

데이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진전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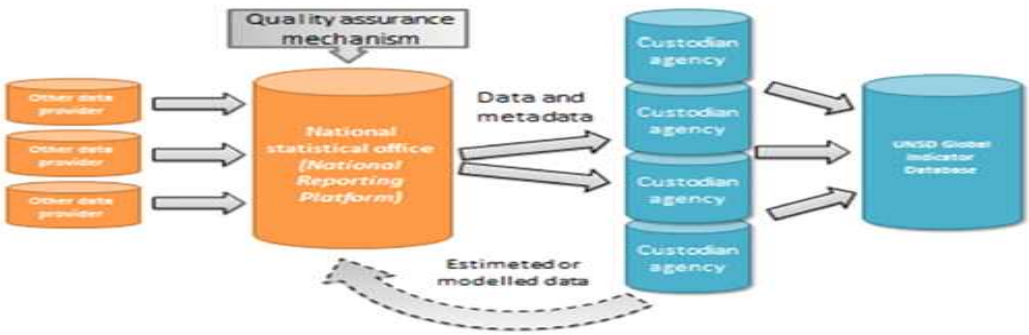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에서의 SDGs 지표 관리 및 데이터 수집 현황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국별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와 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각 지표별 소관 국제기구(Custodian Agencies)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SDGs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 방식 및 체계를 유럽 5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SDGs 지표와 데이터 모니터링의 현황을 우리나라 수준에 맞춰 분석하였다. 우선 현재 유엔 글로벌 SDG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목표별로 지표의 특성, 지표 데이터 제공에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어 지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별로 진행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 현황과 자료제공 형태, 미제공 자료의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향후 SDGs 지표의 국내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제기구로 제공되는 한국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그리고 지표별 소관 부처 및 통계 작성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제 2 장

글로벌 SDGs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현황

제1절 글로벌 보고 체계와 주요 행위자

유엔은 글로벌 수준의 SDGs 자료제공 체계 흐름을 정교화하기 위해 지표별, 국가별 다양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흐름(data flow)'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IAEG-SDGs, 2019a). 이는 SDGs 이전부터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 간 데이터 제공 흐름이 잘 구축되어 있는 지표들도 있으나, SDGs 지표 개발에 따라 새롭게 데이터가 요구되는 경우들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50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각 지표 소관 국제기구들은 SDGs 지표의 개발과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유엔의 SDGs 지표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s on SDG Indicators, IAEG-SDGs)에 보고(reporting)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림 2-1> 글로벌 수준의 SDGs 데이터 제공 체계 (IAEG-SDGs, 2019a)

IAEG-SDGs 그룹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DGs 데이터 및 통계는 각국에서 지표별 소관 국제기구로 그리고 소관 국제기구가 다시 유엔 통계처(UN Statistics Division)로 제공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그림 2-1>). 즉 각국은 국가별 통계 생산

체계 내에서 지표에 대응하는 데이터와 설명자료(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표 소관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이 자료는 각 소관 국제기구에 의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게 가공되어 유엔 통계처에 제출된다.

그러나,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흐름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각국 정부가 국내용으로 발표하는 데이터와 국제기구에서 유엔 통계처에 제출하는 데이터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지표에 해당하는 공식 통계가 없는 경우 비공식 자료(non-official data)가 활용되거나 모델링을 통해 추정된 데이터 값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 지표에 대한 서로 다른 데이터 생산 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각국 통계청의 조정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국제기구가 각국 내 어느 부처와 협의하는지에 따라 다른 데이터가 제공되는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Navaro, 2020). 이에 따라, 회원국, 지표 소관 국제기구, 유엔 통계처 간에 데이터 흐름 및 지표 보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IAEG-SDGs와 통계활동조정위원회(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 CCSA)는 국가별 보고 부담 및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요 행위자(Actors)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2019년 제50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하였다(IAEG-SDGs, 2019b). 주요 행위자에는 ① 통계청을 포함한 국가통계시스템(National Statistical System), ②지표 소관 국제기구, ③유엔 통계처 등이 해당된다.

가. 국가통계시스템

SDGs 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료제공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IAEG-SDGs, 2019b). 또한 SDGs 글로벌 보고의 정확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와 통계는 각국의 국가통계시스템(National Statistical Systems) 내에서 '공식통계원칙(Fundamental Principle of Official Statistics)'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국가통계시스템의 개별 통계 생산기관은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정의와 기준을 활용하여 글로벌 SDGs 지표를 생산한 후 기존의 보고 체계나 국가별 SDGs 지표 보고 플랫폼을 통해 지표 소관기구에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만일 데이터가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정보를 제출하여 지표 소관 국제기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지표 소관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토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알리고, 국가 자료원이나 추정치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구와 상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통계 역량개발과 자료 수집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

다. 지표 소관 국제기구와의 주요 연락이 통계청 이외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SDGs 지표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절차를 통계청에 체계적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계청이 국가 전체 SDGs 지표 조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SDGs 지표 생산을 조율하고 일관된 품질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나. 지표 소관 국제기구

IAEG-SDGs는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지표마다 소관 국제기구를 지정하였다. 소관 국제기구의 핵심적인 역할은 지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및 모니터링하고, 지표 방법론을 개발하며, 국가의 통계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SDGs 데이터의 품질과 자료 보고 체계의 투명성,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및 국제 통계 활동 관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관 국제기구는 국가통계시스템 내에서 합의된 정의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 공식적인 자료원을 활용하여 SDGs 지표를 생산해야 한다. 국제비교를 위해 각국의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적 이슈에 대해서는 지표 값을 공개하기 전에 국가통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 데이터와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국가통계기관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검증과 재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자료원과 방법론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모든 이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또한, SDGs 지표의 국제적 기준 적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 국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국가의 통계청을 통해 역량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고 방식이나 국가별 SDGs 지표 보고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고, SDMX와 APIs 등 적절한 자료 전송 기준 또는 툴을 장려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국제기구들과 데이터 수집 업무 일정 및 데이터 공유 방식 등을 협의·조정함으로써 국제기구 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중복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통계체계 내에서 통계청의 조정기능 강화와 품질이 담보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관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에 SDGs 데이터를 요청할 때 통계청에도 동일한 요청 내용을 전달하여 통계청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표 생산을 위한 최적의 통계방법론과 자료원을 판별해 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지표 소관 국제기구는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유엔 및 다른 국제기구, 일반에게 무상으로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설명자료,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등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 유엔 통계처

유엔 통계처는 지표 소관 국제기구로부터 수집된 각국의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AEG-SDGs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기본적인 SDGs 지표의 개념과 방법론을 관리하고 소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다. 유엔 통계처가 SDGs 지표를 총괄 관리하는 웹사이트[1]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째,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국별 데이터 서비스, 둘째, 지표별 메타데이터(설명자료) 제공, 셋째, 글로벌 SDGs 데이터 수집방법 안내 등이다.

첫째로 지표 소관 국제기구가 제공한 SDGs 데이터는 유엔 통계처의 데이터베이스[2] 내에서 관리 및 서비스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지표별 국가 데이터와 함께, 지역 및 글로벌 합계치(aggregates)가 수록되어 있다. 2020년 2월 기준 247개의 SDGs 지표 중 166개 지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개별 지표에는 1개 이상의 세부 지표(통계표)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데이터 값, 연관된 다른 지표 등이 데이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UNSC, 2020).

<표 2-1> 지표별 데이터베이스 내 수록된 통계표 형태 (예시)

지표	지표명	세부 지표(통계표)
3.2.1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영아 사망자 수
		영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5세 미만 사망자 수
		5세 미만 사망률(성별, 출생아 1,000명당)

다음으로 유엔의 웹사이트에는 각 지표의 개념 및 작성방법 등을 알 수 있는 메타데이터(설명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3] 메타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를 정의하고 묘사하는 데이터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지표의 개념 및 정의, 측정 산식, 데이터 수집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지표 및 데이터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한 투명한 조정 과정의 근거로, 국가와 글로벌 데이터가 왜 불일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 현재, 247개 지

1) http://unstats.un.org.sdgs

2)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3) http://unstats.un.org.sdgs/meta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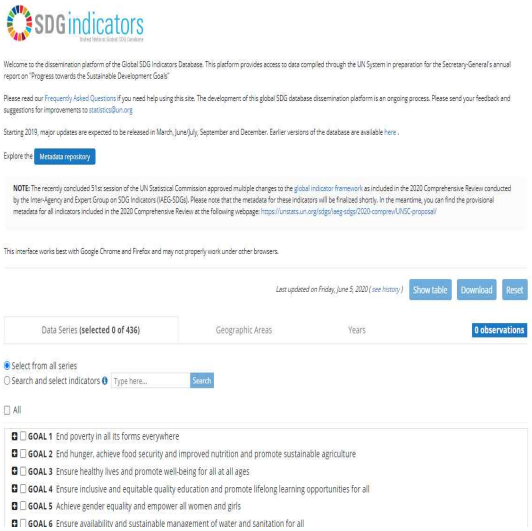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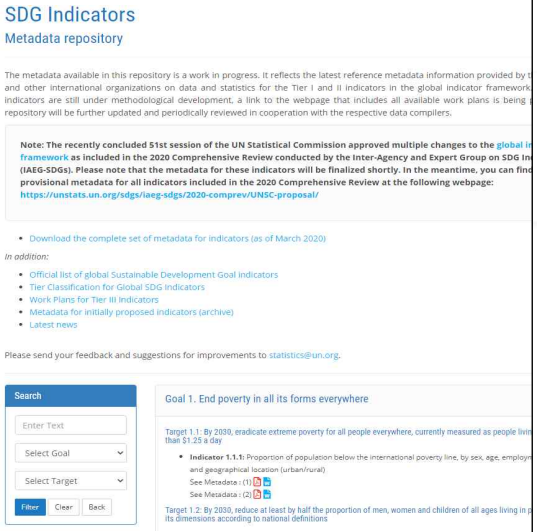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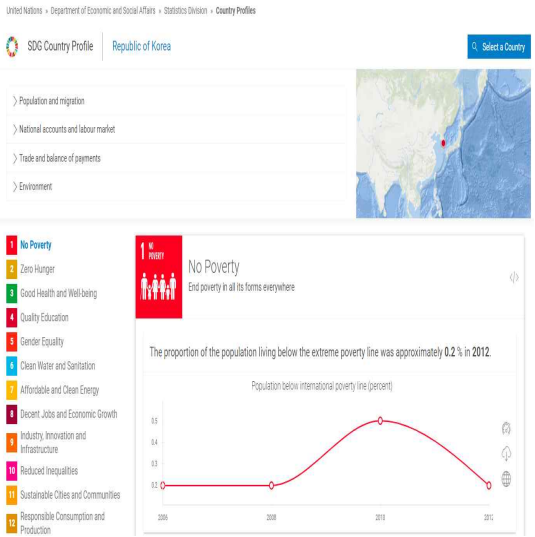
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거의 대부분 업데이트되어 있다. 다만, 2020년 종합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 20여 개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은 아직 개발 중이다. 데이터베이스와 메타데이터는 유엔 통계처와 지표 소관 국제기구의 협력하에 관리 및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4회(3·7·10·12월) 분기별로 현행화된다. 한편, 유엔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가별 데이터에 기반 한 SDGs 개요도 살펴볼 수 있다.[4)]

마지막으로, 유엔 통계처의 웹사이트는 국가 및 지표 소관 국제기구별로 지표 책임자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수집 일정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5)] 즉, 각 국제기구 담당자와 이들이 각국의 어느 기관을 통해 언제, 얼마간의 주기로 데이터를 수집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추적(traceability)이 가능하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제기구로부터 데이터 요청이 언제쯤 진행될지 예상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고,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정확한 때에 해당 국가 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4)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

5) https://unstats.un.org/sdgs/dataContracts

<그림 2-2> 유엔 통계처 내 데이터베이스와 메타데이터, 국가 프로파일 제공 현황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국가 프로파일
		

제2절 국제기구별 SDGs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현황

이 절에서는 개별 국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지표 소관 국제기구의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2-2>는 SDGs 목표별 지표 소관 국제기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총 37개의 국제기구가 247개 지표에 대해 방법론 개발, 국가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6)]

<표 2-2> SDGs 목표별 지표 소관 국제기구 현황

구분	국제기구 (괄호 안은 소관지표 수)
목표 1	UNISDR(4), World Bank(3), ILO(2), UN-Habitat(2), UNESCO(1)
목표 2	FAO(9), WHO(2), UNICEF(2), OECD(1), WTO(1)
목표 3	WHO(18), UNICEF(4), UNDESA(2), UNAIDS(1), UNODC(1), OECD(1)
목표 4	UNESCO(8), UNICEF(1), OECD(1), ITU(1)
목표 5	UNWOMEN(8), UNICEF(4) WHO(2), UNODC(2), UNFPA(2), FAO(2), ILO(1), ITU(1), OECD(1), UNDP(1)
목표 6	WHO(4), UNEP(3), UNICEF(2), FAO(2), OECD(1), UNESCO(1), UNECE(1)
목표 7	IEA(3), UNSD(2), OECD(1), IRENA(1), World Bank(1), WHO(1)
목표 8	ILO(9), OECD(2), UNEP(2), UNWT(1), World Bank(1), IMF(1), UNSD(1)
목표 9	UNIDO(6), World Bank(2), UNESCO(2), ICAO(1), IEA(1), OECD(1), ITU(1)
목표 10	World Bank(4), ILO(2), UNDESA(2), ITC(1), OECD(1), OHCHR(1), IMF(1)
목표 11	UN-Habitat(7), UNISDR(4), WHO(1), UNODC(1), UNESCO(1)
목표 12	UNEP(10), FAO(1), UNSD(1), UNESCO(1), IEA(1), UNWT(1)
목표 13	UNFCCC(4), UNISDR(3)
목표 14	UNEP(4), FAO(4), UNESCO(2), UNCLOS(1)
목표 15	FAO(3), IUCN(3), UNEP(2), CBD-Secretariat(2), UNODC(2), OECD(2), UNCCD(1),
목표 16	UNODC(10), OHCHR(4), UNICEF(3), UNDP(3), World Bank(2), UNESCO(2), IPU(1), UNDESA(1), UNCTAD(1), UNODA(1)
목표 17	OECD(5), World Bank(4), ITC(3), PARIS21(3), IMF(2), UNCTAD(2), ITU(2), UNSD(2), UNESCO(1), WTO(1), UNEP(1)

주: 2020 지표 종합개편 이후 소관기구가 할당되지 않은 지표는 미포함. 단일 지표에 두 개 이상의 소관기구가 할당된 경우는 각각 계산

6) IAEG-SDGs는 지표별로 소관 국제기구뿐 아니라 협력기관(partner agency)도 할당하였는데 협력기관까지 포함하면 60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SDGs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특정 목표의 경우 해당 목표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국제기구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은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를 위해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목표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해당 목표의 지표 관리를 총괄한다. <표 2-3>은 국제기구별로 소관하고 있는 지표 수를 제시하고 있다. WHO, 유엔 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는 20개 이상의 지표를 소관하고 있었다. <표 2-2>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WHO가 건강, UNEP이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FAO는 목표2, 목표5, 목표6, 목표12, 목표14, 목표15 등 다양한 목표에 걸쳐 있는 지표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개 지표를 소관하는 국제기구도 8개에 해당하였다.

<표 2-3> 소관지표 수에 따른 국제기구

소관지표 수	국제기구 (괄호 안은 소관 지표 수)
20개 이상	WHO(28), UNEP(20), FAO(21)
15개~19개	UNESCO(18), World Bank(17), OECD(17), UNICEF (16), UNODC (15)
10개~14개	ILO(14), UNISDR(4),
5개~9개	UN-Habitat(9), UNWOMEN(8), UNSD(6), UNIDO(6), ITU(5),
4개 이하	UNDESA(4), OHCHR(4), IEA (4), IMF(4), ITC(4), UNDP(4), UNFCC(3), IUCN(3), PARIS21(3), UNCTAD(3), WTO(2), UNFPA(2), UNWT(2), CBD-Secretariat(2), UNAIDS(1), UNECE(1), IRENA(1), ICAO(1), UNCLOS(1), UNCCD(1), UNODA(1), IPU(1)

국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는 방법은 국제기구 및 수집하는 데이터의 특성 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개 국제기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식량농업기구(FAO)

총 21개 지표를 담당하는 FAO는 지표별로 국가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산림면적비율(15.1.1)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진전(15.2.1) 지표의 경우 FAO의 '산림자원평가(Forest Resources Assessment, FRA)'라는 툴로 관리된다. FRA는 1948년부터 각국의 산림 자원에 관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는 평가표로써, 공식적으로 지정된 187개 국가 및 영토(territory)로부터 정보를 취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청이 공식 책임 기관(focal point)이며 산림과학원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각국으로부터 취합된 데이터는 FAO 내 FRA팀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 공유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지표 15.1.1과 15.2.1은 유엔 통계처에 제출된다(<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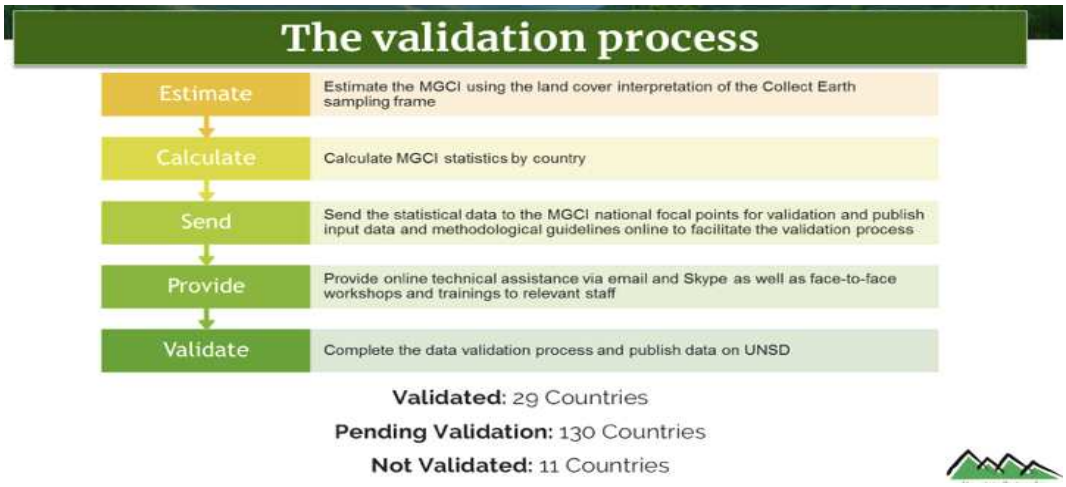


<그림 2-3> 지표 15.1.1과 15.2.1 데이터 제공 및 검증과정(Branthomme, 2019)

국가별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FAO에서 별도로 추정을 할 경우는 <그림 2-4>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를 생산한다. 예를 들면, 지표 15.4.1에 해당하는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Mountain Green Covered Index, MGCI)'는 세계산림조사(Global Forest Survey)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별 추정치를 계산한다. 계산된 값은 국가별 검증을 위해 국별 연락관(focal point)에게 공유하고, 이메일이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작성 과정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해당 지표에 대해 검증이 완료된 국가는 29개국, 검증이 진행 중인 국가는 130개국임을 알 수 있다(<그림 2-4>). 최종적으로 데이터 검증이 완료되면, 데이터는 유엔 통계처로 제출된다.

FAO는 소관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뿐 아니라 회원국의 통계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가별 통계역량평가(Statistical Capacity Assessment)를 실시하였는데, 주요한 세 가지 결과를 제시했다. 첫째, 대다수의 국가들이 SDGs 보고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으나, FAO 소관 일부 지표 중

에서는 국가 내에서 소관 부처를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 데이터와 유엔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 간에 불일치가 발견된다고 밝혔다. 둘째로, 다수의 국가들이 영양(nutrition) 지표와 관계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단 기간 내 조사가 계획되어 있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 111개 국가 중 75%가 FAO 소관 지표 중에 최소 하나 이상 역량강화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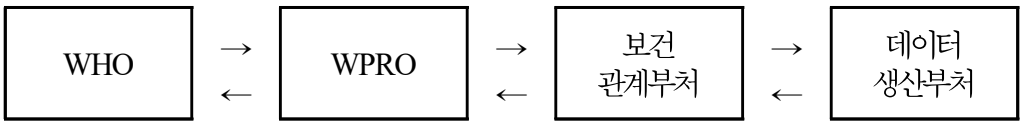
<그림 2-4> 지표 15.4.2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검증과정(Fabio, 2019)

이에 따라, FAO는 지표 작성 방법론 개발 및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험 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AO는 한국의 SDGs 지표 책임기관인(Natioal Focal Point, NFP)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함께 영양 지표인 2.1.1(영양부족인구비율)과 2.1.2(식량불안인구비율)에 대해 한국에서 워크숍(2019.12.11.~13.)을 실시한 바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본부, FAO 한국협회에서 참석하여 지표 작성방법에 관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이 워크숍을 통해 영양 지표의 국내 소관기구 및 데이터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국민들의 섭취행태를 실제로 조사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 향후 FAO에서는 2.1.1 지표 방법론을 보완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추후 데이터 공유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FAO, 2019).

7) www.fao.org (인출일: 2020. 6. 17.)

나. 세계보건기구(WHO)

WHO는 FAO와 달리 단일의 목표에 집중되어 지표를 소관하고 있는 기구이다. SDGs 3번 목표 대부분에 대해 WHO가 방법론 개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WHO의 지역사무소가 중간 조정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이 속해있는 서태평양지역사무소(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PRO)는 데이터 공유페이지(Data Exchange Tool)를 개설하여 회원국의 SDGs와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WPRO의 파트너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SDGs 3번에 해당하는 국내 데이터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데이터 요청 포맷은 엑셀 파일이며 각각의 시트에 SDG 3 데이터 값, SDG 내 건강 관련 지표 데이터 값, UHC 관련 데이터 값, 인구학적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SDG 3에 해당하는 지표와 관련해서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국세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은 사망원인 관련 데이터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2-5> WHO 자료 수집 흐름도 (저자 작성)

다.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SDGs 지표 중 범죄 및 안전에 관한 지표를 담당하는 UNODC(UN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유엔 범죄동향조사(Crime Trends and System of Criminal Justice, UN-CTS)라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SDGs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 각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과 범죄 발생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1977년에 시작된 이 조사는 200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984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Commission of Economic and Social, UN ECOSOC)가 UNODC에 범죄 동향과 형사 사법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CTS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통계 국제 데이터베이스[8]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SDGs가 채택된 이후에는 SDGs 목표 중에서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 CTS 책임 기관들과의 광

8) http://dataunodc.un.org

범위한 협의(2016, 2018)를 통해 CTS 설문지를 개편하였다. 각국으로부터 범죄 및 형사 사법 체계 데이터 수집과정을 청취하여 자료 수집 과정을 개선하고, 메타데이터 수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CTS에서는 6개 SDGs 범죄 지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표 2-4> UNODC 소관 범죄 관련 지표

지표	지표명
16.1.1	고의적 살인 범죄 피해자수
16.1.3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관에 피해 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16.5.1	지난 12개월간 공무원을 최소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인구 비율

국내에서 CTS 데이터를 총괄하여 수집, 제출하는 기관은 통계청이다. 통계청은 경찰청,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UNODC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제출된 데이터는 UNODC의 검증과정을 거쳐 UNODC 데이터 포털에 업로드되는 동시에 유엔 SDGs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제3절 SDGs 데이터 제공 및 관리 해외 사례

3절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해 각 국별로 지표 관리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SDGs 지표가 채택되고 약 5년이 지나는 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 그간 많은 국가들이 자발적국가보고(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보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SDGs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데이터 관리 방안, 각국 통계청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독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SDGs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독일

독일은 유럽 국가 중 2016년 자발적국가보고(VNR)를 처음 제출한 국가다.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은 2002년 독일지속가능발전전략(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GSDS)을 발표한 이래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다. 독일은 글로벌 SDGs 채택 이후, SDGs 이슈들을 기존의 GSDS에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2017년 새로운 버전의 GSDS를 발표하였다.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차관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독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방향과 활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독일은 GSDS의 진척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방향의 재설정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 작업을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GSDS 지표의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GSDS는 6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현행화되고 있다. 첫째, 글로벌 SDGs 의제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의제와 지향점을 같이 할 것. 둘째, 글로벌 SDGs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지표와 목표 수는 제한적으로 둘 것. 셋째, 목표와 지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올 것. 넷째, 목표의 통제 가능성과 의사소통 가능성을 지킬 것 등이다.

독일은 범부처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표의 모니터링과 현행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GSDS의 지표 선정 과정에는 각 부처가 글로벌 SDGs 이슈를 반영하면서도 국내 정책 우선 순위가 필요한 부분을 분석한 후 목표별 달성을 위한 공동의 계획안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범부처작업반(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이 지표 개발과, 지표와 관련된 자문, 각 부처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 통계청이 지표 관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GSDS 지표의 모니터링 보고서(2년 주기)는 독일 통계청이 작성하며, 이는 다른 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형태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매년 유엔 글로벌 SDGs 지표에 대한 독일의 진척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도 독일 통계청이 발간한다. 독일 통계청은 글로벌 SDGs에 수록되는 독일 데이터의 주요 공급자(provider)로서 매년 자국의 데이터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영국과 미국이 개발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sustainabledevelopment-germany.github.io)하고 글로벌 SDGs 지표의 독일 데이터를 대외적으로 서비스하는 기능도 확충하였다.

독일은 플랫폼 구축 시점 기준 총 244개 지표 중 약 62%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6(물과 위생), 8(경제성장과 일자리), 9(산업화와 혁신) 부문의 지표 제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목표 1(빈곤종식), 10(불평등 완화), 12(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3(기후변화) 부문의 지표 제공률은 33% 정도에 그쳤다. 독일은 SDGs

지표 중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 외에도 전쟁 및 분쟁 이슈 관련 지표(목표 16), 국제기구 투표권 등 국내 이슈와 관계없는 지표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독일 통계청은 지표 데이터의 제공률 제고 및 세분화된 자료제공을 위해 G7 국가들과 협력하여 특히 빈곤 관련 질병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2. 영국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기존의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갖고 있었던 사례와 달리, 글로벌 SDGs에 대해 집중하는 국가 중 하나다. 영국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종료될 무렵부터 자국의 총리가 유엔 정상회의 수준에서 Post-2015 의제와 SDGs 목표 초기 작업에 참여하는 등 SDGs가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확장되는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다.

영국은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가 SDGs의 자국 이행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영국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이 글로벌 지표의 모니터링과 데이터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SDGs 지표에 관해서도 초기 논의 단계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국가 중 하나로 영국 통계청장은 유엔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의 의장(2015-2016)으로서 IAEG-SDGs 그룹의 당연직 위원으로 글로벌 지표의 개발 과정을 이끌었다. 영국 통계청은 또한, 유럽 통계기관장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CES)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SDGs 통계전문가 그룹에도 참여하며 SDGs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로드맵 작성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영국 통계제도는 분산형에 가까우나 지난 2018년 영국 국가통계위원회(UK Statistics Authority, UKSA)가 의회 내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개별 부처의 통계담당관(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s, GSS)들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 영국 통계청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SDGs 지표별 부처의 정책 우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지표 및 방법론 개발에 협력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글로벌 SDGs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네 가지로 규정하였는데, 첫째, 글로벌 지표에 해당하는 적절한 국내 데이터 파악, 둘째, 소관 국제기구로의 데이터 제출, 셋째, 데이터 분석, 넷째, 온라인 방식 또는 보고서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가 그것이다(ONS, 2017). 2018년에는 영국 데이터의 가용성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담은 '포용적 데이터 액션플랜(Inclusive Data Action Plan)'을 수립하여, SDGs가 지향하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형태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분화 이슈와 관련하여 지표별로 세분화가 필요한 통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연구그룹(예, 고령화에 관한 티치필드그룹, 이주통계그룹, 환경자본그룹, 지역그룹 등)을 구성하여 지표별 세분화 데이터 생산을 위한 연구와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영국 통계청은 당초 국제적 수준에서 합의되지 않은 추가적인 세분화 영역(예, 임신한 여성, 산업별 등)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작성하여 영국 특성에 맞는 정책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영국은 대국민서비스와 관련하여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처음 구축한 국가다. ONS는 미국 Center for Open Data Enterprise(CODE)와 협력하여 오픈소스를 활용한 국가보고플랫폼(National Reporting Platform, NRP)을 구축하고 영국의 SDGs 지표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증대 및 지표별 소관 국제기구들이 NRP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였다. 영국은 해당 플랫폼을 개발도상국가에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르완다 통계청과 가나 통계청에 동일한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고 직원 역량교육 및 연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사용 중인 오픈플랫폼도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글로벌 SDGs에 대한 오너십이 강한 만큼 글로벌 지표에 해당하는 자국 데이터 제공률을 높이는데 매우 노력하고 있다. 2018년 ONS는 SDGs 지표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 평가를 통해 약 47%의 지표에 대한 데이터 제공 가능성을 확인하였다(ONS, 2018). 약 53%에 해당하는 130여 개의 지표는 '보고되지 않음(unreported)'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지표들 중 66%는 향후 제공이 가능한 지표들로 확인되었다. 이때 영국은 향후 3년 내 70%까지 제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하였는데, 2019년 자발적 국가보고(VNR) 발표 당시, 전체 244개 지표 중 180개 지표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74%의 제공률을 보였다(HM Government, 2019). 특히 목표 5(양성평등), 7(에너지), 13(기후변화)에 대해서는 100%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독일과는 지표 제공 부문에 차이를 보였다.

최근 영국 통계청은 SDGs 지표의 이용자 확대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약 5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SDGs 지표의 이용 목적이나 플랫폼 사용 경험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여 향후 연구나 사이트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웹접근성 강화를 위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 등 플랫폼의 이용자 대상 확대를 위한 작업도 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11월 SDGs 지표 및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3. 스웨덴

스웨덴은 범부처 차원에서 SDG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부(Ministry for Public Administration)와 국제개발기후부(Minist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가 이를 주관하고 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기업혁신부 등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통계청에게 SDG 이행을 위한 지표 모니터링과 데이터 생산을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스웨덴 통계청은 매년 3월 이행보고서를 발간하고 지표 관리 및 신규지표 개발을 위한 범부처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 통계청은 이행보고서 외에도 2021년까지 매년 10월 지표의 데이터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표 모니터링 방법 개선을 위한 제안과 부처별 업무 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스웨덴 통계청은 2017년 SDGs 지표 가용성 평가 작업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모니터링할 지표를 선별하고 지표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할 소관 부처를 명시화하였다. 스웨덴 통계청은 2018년 지표 담당 부처 및 통계 생산기관 등 약 60여 개 기관과 예비 모임을 갖고 향후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부처별 협력방안 및 신규지표 개발에 필요한 업무 체계 구축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로벌 지표에 부합하는 국내 지표를 연계하여 스웨덴 국가 지표 리스트(안)을 작성하고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2019년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스웨덴은 SDGs 지표 유관 기관과의 실무급 회의를 통해 자료 생산과 제공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기관 차원의 포럼(연간)을 통해 지표 소관 부처와 소통하는 등 다양한 조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작성 형식,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표 소관 기관 및 이용자들과의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 담당 기관 및 담당자들의 명단도 서로 공유하는 등 SDGs 지표 관리를 위한 총괄 조정 활동을 활발히 수행 중에 있다. 국제적으로는 SDGs 지표 소관 국제기구들과의 국제 포럼 및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자문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 통계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준에서의 소관 국제기구들의 자료요구 및 요청 패턴이 매우 다양하고 소관 부처들도 업무 담당자의 이동 등으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으며, 부처 내부에서도 이러한 지표에 대한 오너십 등이 잘 작동되지 않는 도전과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담당자 지정뿐만 아니라 지표 관리와 개선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다.

4.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2016년에 SDGs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Measuring the SDGs: an Initial Picture for the Netherlands)를 발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지표 중 수단적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정책 투입 지표(예, 1.a, 1.b 등)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192개 지표에 대해서만 데이터 가용성을 평가하였다(Statistics Netherlands, 2017). 그 결과, 2016년 기준 유엔 SDGs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가용한 데이터는 33% 수준이었으며 2017년에는 51%로 상승하였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자발적국가보고(VNR)를 2017년에 제출한 바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SDGs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선정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Statistics Netherlands, 2017, 2018). 첫째, 네덜란드의 실질적, 정책적 맥락과는 상관없이 가급적 IAEG-SDGs에서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측정한다. 둘째, 여러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네덜란드가 이미 달성한 지표이거나 네덜란드와 무관한 지표는 제외한다. 셋째, 지표 중에 가용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대체지표(alternative indicator)를 활용하여 해당 목표에 대한 네덜란드의 현재 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택된 지표는 연간 보고에 따라 그 현황이 발표되는데, 데이터를 발표하는 통계표에는 지표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로 모니터링이 계량적으로 가능하고 데이터가 바로 제공되는 지표는 1) 공식 SDGs 지표, 2) 대체지표(alternative indicator)로 구분하고, 현재 제공이 불가능한 지표는 1) 이미 목표를 달성하여 모니터링의 의미가 없거나 목표 자체가 네덜란드와 관계없는 지표, 2) 현재 계량화하기 어려운 지표이자 개발이 필요한 지표로 구분하고 있다.

5.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각 부처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산하에 통계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지표 선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국가 중 하나다. 정책 및 통계 전문가가 협의를 통해 169개 세부 목표 중 자국에 해당하는 126개의 목표를 선별하고 관련된 지표 선정을 두 단계에 거쳐 진행하였다. 우선, 목표를 대표하는 지표가 잘 선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데이터의 생산 방법 및 가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하였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는 현재 룩셈부르크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른 지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것이다. 둘째

로, 국제적 수준(OECD, EU 등)의 지표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지표는 다른 나라에 해당하는 지표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약 130여 개 지표를 선별한 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다.

제4절 주요 시사점

SDGs의 달성 여부는 각국이 제공한 정확한 자료와 국제기구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에, 유엔 통계위원회는 IAEG-SDGs에 데이터 흐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요청하였으며, 국가·국제기구·유엔 통계처 간의 역할을 제시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보고 체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유형의 사례 등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유엔 지침의 핵심은 SDGs가 공식적인 통계원칙에 기반하여 생산된 데이터와 통계를 근간으로 하며, 국가통계시스템과 국제기구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 비교가능성 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통계청은 국가통계시스템 내에서 조정 역할과 함께 국제기구와의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관리뿐 아니라 국가보고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국 통계청은 데이터 흐름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범부처작업반을 통해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선정·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지표관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엔 SDGs 데이터베이스 내 독일 데이터의 주요 공급자로서 현행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분산형 통계시스템인 영국은 최근에 국가통계위원회가 의회 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개별 부처의 통계담당관들과의 협업체계가 강화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SDGs 지표 및 방법론 개발 과정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 통계청 또한 2018년에 SDGs 이행을 위한 지표 모니터링과 데이터 생산을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지표 관리 및 신규지표 개발을 위한 범부처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SDGs 지표 유관기관과의 실무급 회의를 통해 자료 생산과 제공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매년 기관 차원의 포럼을 통해 지표 소관부처와 소통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 내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제기구에서도 국가별 데이터 자료원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제공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국가통계시스템 및 통계청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별, 국제기구별 데이터 제공 흐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이미 보고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통계청이 데이터 흐름 과정에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 SDGs 지표 체계 전체에 대한 조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는 동일한 지표에 대해 여러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국제기구마다 서로 접촉기관이 상이하여 다른 데이터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국가, 국가통계시스템 내 부처와 통계청 간에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플랫폼을 통해 SDGs 지표 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SDGs 국내 데이터 제공 현황

제1절 국내 데이터 수록 현황

제 3장에서는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방안 도출에 앞서, 한국 데이터의 제공 현황과 제공 체계,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본다. 한국 데이터의 현황은 현재 유엔 글로벌 SDGs 데이터베이스 내 수록된 한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록 규모와 성격, 지표별 자료제공의 주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이어서 부처별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표별 소관 부처, 자료제공 체계, 미수록 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 결과를 소개한다.

1.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현황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현재 유엔에서 제시한 글로벌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 데이터의 수록 현황을 검토하였다. 전체 지표 프레임워크는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되어 제51차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승인받은 IAEG-SDGs 그룹의 종합개편(Comprehensive Review) 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부록 1 참조) 개편 결과에 따라 총 247개 지표가 확정되었으며, 그 중 중복지표를 제외하면 231개에 해당한다. 한국 데이터에 대한 목표별 가용성 분석 시에는 중복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3-1>은 현재 유엔 글로벌 SDG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내 데이터의 제공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총 247개 지표 중 59.1% 정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아직 40.9% 정도는 지표의 개발이나 데이터 제공이 필요한 지표들이다. 이 중 종합개편 작업을 거치면서 신규로 편입되거나 수정된 지표 21개는 글로벌 수준의 메타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국내 데이터가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목표 3), 물 관리(목표 6), 에너지(목표 7). 육상생태계(목표 15) 관련 목표들은 비교적 국내 데이터의 수록 비율이 높은 반면, 성평등(목표 5), 고용(목표 8), 도시(목표 11), 기후변화(목표 13), 제도(목표 16) 부문의 제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섹션에서는 목표별 한국 데이터의 수록 현황을 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 목표별 글로벌 DB 내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21. 2. 기준)

목표	지표 수	데이터 수록 현황		
		수록	미수록	수록 비중(%)
1(빈곤)	13	8	5	61.5
2(식량)	14	9	5	64.3
3(건강)	28	24	4	85.7
4(교육)	12	6	6	50.0
5(성평등)	14	4	10	28.6
6(물)	11	9	2	81.8
7(에너지)	6	5	1	83.3
8(고용)	16	9	7	56.3
9(산업)	12	9	3	75.0
10(불평등)	14	8	6	57.1
11(도시)	14	5	9	35.7
12(소비생산)	13	7	6	53.8
13(기후변화)	8	3	5	37.5
14(해양생태계)	10	5	5	50.0
15(육상생태계)	14	12	2	85.7
16(제도)	24	10	14	41.7
17(파트너십)	24	13	11	54.2
총 계	**247** (중복 제외 시 231)	**146** (136)	**101** (95)	**59.1** (58.9)

2. 목표별 자료제공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목표 1 - 빈곤 퇴치

목표 1은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7개 세부 목표와 1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주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국제 및 국내 빈곤선, 다차원 빈곤에 따른 인구 구성 비율(1.1.1, 1.2.1, 1.2.2), 둘째, 사회보장 비율(1.3.1), 셋째, 최소한의 생계와 삶 유지를 위한 기초

서비스 접근성 및 토지권(1.4.1, 1.4.2), 넷째, 재난 등 취약 상황에 대한 회복력(1.5.1, 1.5.2, 1.5.3, 1.5.4)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지표로 빈곤 감소를 위한 재정 자원의 투입(1.a.1, 1.a.2, 1.a.3, 1.b.1) 등이다.

<표 3-2> 목표 1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성·연령·고용상태 및 지역(도시/농촌)별 비율	수록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미수록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미수록
1.3.1	사회적 보호 최저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의 성·특수아동·실업자·노령자·장애인·임산부·신생아·산업재해피해자·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비율	수록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수록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갖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성인 인구의 비율(성별, 보유 형태별)	수록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수록
1.5.2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	수록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수록
1.5.4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수록
1.a.1	수원국 내 국민총소득 대비 빈곤감소를 위해 받은 ODA 총액	미수록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 (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미수록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미수록

유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내 데이터의 경우, 국제 빈곤선 미만의 인구비율(1.1.1), 기초서비스(1.4.1), 재난 관련 지표(1.5 세부 목표) 등은 자료의 현행화가 비교적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표이다. 사회보장제도 및 재정 투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국제기구 자체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향후 유관 부처(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자료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빈곤과 관련된 지표에는 자료 수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의 빈곤통계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

직 '국가 빈곤선'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1.2.2에 해당하는 '다차원적 빈곤'에 관해서는 국내 논의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관련된 지표의 데이터와 그와 연계된 세분화된 자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나. 목표 2 - 기아 종식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를 목표로 하는 SDGs 2번은 총 8개의 세부 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결핍과 식량 안보에 관한 지표(2.1.1, 2.1.2, 2.2.1, 2.2.2)와 농업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지표(2.3.1, 2.3.2, 2.4.1), 농업의 유전 다양성 보전(2.5.1, 2.5.2)과 농업 분야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에 관한 지표(2.a.1, 2.a.2, 2.b.1, 2.c.1) 등으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표 3-3> 목표 2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2.1.1	영양부족인구 비율	수록
2.1.2	식품불안경험척도(FIES) 기준,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food insecurity) 인구 비율	수록
2.2.1	5세 미만(under) 발육부진 아동 비율	수록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수록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여부별)	미수록
2.3.1	노동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미수록
2.3.2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성 및 원주민여부별)	미수록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미수록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	수록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수록
2.a.1	농업지향지수	수록
2.a.2	농업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미수록
2.b.1	농업수출보조금	수록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수록

국내 데이터의 경우 식량 안보 부문과 농업 유전자원에 대한 자료는 기존의 관련 부처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국제기구가 추신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2.3.1, 2.3.2, 2.4.1) 경우, 측정 개념(생산성, 소작농, 지속가능한 농업지역, 식량가격이상지표 등)의 차이로 현재 소관 부처에서 자료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지표들이다. 2.3.1과 2.3.2는 농가경제조사 등을 통해 유사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나 그 외의 지표는 현재 생산되는 통계 내에서는 제공이 어려운 지표들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유사 지표 등을 통한 자료제공 및 신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다. 목표 3 - 건강과 웰빙 증진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을 목표로 하는 SDGs 3번은 총 13개의 세부 목표와 2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SDGs 전체 지표 중 양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각종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상해와 사망 관련된 지표(3.1.1, 3.2.1, 3.2.2, 3.4.1, 3.4.2, 3.6.1, 3.9.1, 3.9.2, 3.9.3)뿐만 아니라 감염병 지표(3.3.1, 3.3.2, 3.3.3, 3.3.4, 3.3.5), 흡연 및 약물 관련 지표(3.5.1, 3.5.2, 3.a.1) 등이 큰 축을 이루지만 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에 관한 지표(3.1.2, 3.7.1, 3.7.2, 3.8.1, 3.8.2, 3.b.1, 3.b.c, 3.c.1, 3.d.1)도 포함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의 의료 개선 및 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3.b.2)도 수단적 목표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

3번 목표와 관련된 국내 데이터는 다른 지표에 비해 매우 잘 제공되고 있으며, 기초가 되는 국내 통계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2절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WHO의 SDGs 3번 목표와 관련된 국내 연락관(focal point)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3번 목표의 지표 및 건강과 관련된 다른 목표 내 관련 지표들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표들(3.1.2, 3.5.1, 3.7.1, 3.8.1, 3.9.1, 3.d.1)의 경우 국내 통계와의 개념 정합성이 낮아 관련 부처에서 직접 제공되지 않고 국제기구가 기존의 공개된 자료를 통해 국내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통계와의 정합성을 확인 후 데이터의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4> 목표 3 해당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3.1.1	모성사망비	수록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수록
3.2.1	5세 미만 사망률	수록
3.2.2	신생아 사망률	수록
3.3.1	비감염인구 천 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의 수 (성, 연령, 주요 인구특성별)	미수록
3.3.2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수록
3.3.3	말라리아 발생률(인구 천 명당)	수록
3.3.4	인구 10만 명당 신규 B형 간염 감염자수	수록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수록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수록
3.4.2	자살률	수록
3.5.1	약물장애 치료개입 (의약, 사회심리,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범위	수록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수록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수록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미수록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출산률	수록
3.8.1	필수 보건 서비스 보장범위	수록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수록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수록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수록
3.9.3	비고의적 중독 사망률	수록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	수록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수록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부문 ODA 순지출액	미수록
3.b.3	적정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미수록
3.c.1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수록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수록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율	수록

라. 목표 4 - 양질의 교육보장

SDGs의 네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증진'이다. 영유아 교육부터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의 참여 비율과 학습 부문별 차이, 성별 불평등 이슈 등을 다룬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지표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장학금을 포함한 ODA 규모, 학교의 기초 서비스 구비 여부 및 양질의 교사 보유 비율 등이 해당된다. 총 10개 세부 목표에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 지표를 제외하고 11개의 지표가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지표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의 조사인 '국제학업성취도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의 국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PISA 자료는 4.1.1, 4.5.1, PIAAC 자료는 4.3.1, 4.5.1, 4.6.1, TIMSS 자료는 4.1.1, 4.5.1 지표에 활용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자료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4.2의 체계적 교육을 받는 아동의 비율이나 4.5.1의 ICT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등도 국내 공식통계 내에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한 지표들로 파악된다. 다만, 4.a.1의 경우 일반 학교의 기초시설 여부는 매우 잘 제공되고 있으나, 장애학교에 대한 가용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향후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미제공되고 있는 지표 중 우리나라가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4.2.1을 제외한 4.1.2, 4.7.1, 4.c.1에 대해서는 추후 글로벌 메타데이터 확정 및 국제기구의 설문조사가 진행될 시 자료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표 3-5> 목표 4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4.1.1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비율	수록
4.1.2*	초, 중, 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미수록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의 성별 비율	미수록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 (성별)	수록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성별 비율	미수록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성인의 비율(기술유형별)	수록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4.5.1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 등)	수록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의 성별 비율	수록
4.7.1*	지속가능벌전교육이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미수록
4.a.1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는 학교의 비율(서비스별)	수록
4.b.1	장학금의 ODA 금액(연구부문 및 연구유형별)	미수록
4.c.1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교육 단계별)	미수록

주: * 2020 종합개편 안 신규지표로 글로벌 메타데이터 미확정

마. 목표 5 - 성평등 달성

SDGs의 5번 목표는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이다. 성평등에 관한 이슈는 SDGs의 세분화 이슈 중 성별이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기준 중 하나임과 동시에 별도의 목표로 분리되어 있을 만큼 핵심적인 주제이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목표 5는 '여성'의 생존 보장과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총 9개 세부 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된 5번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볼 수 있는데, 여성 및 여아 대상의 차별(5.1.1)과 폭력(5.2.1, 5.2.2)의 철폐와 관습에 의한 불합리한 여성 차별(5.3.1, 5.3.2)이 하나의 큰 지표 축이다. 두 번째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적 측면에서 공공영역과 고위직 진출 비율(5.5.1, 5.5.2)과 가사노동에 대한 재평가(5.4.1)가 지표로 반영되어 있으며 셋째로 여성의 몸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나타내는 지표(5.6.1, 5.6.2)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지표로 여성의 경제적 자원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5.a.1, 5.a.2), 정보통신기술의 보급(5.b.1), 성평등을 추진하는 정책 구비 여부(5.c.1) 등이 해당된다.

목표 5번과 관련된 국내 데이터는 아직 미수록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에 정책적 관련성이 낮은 지표(5.3.2) 및 국내의 명확한 통계가 있는 지표(5.4.1, 5.5.1, 5.b.1)를 제외하고도 미수록 지표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지표의 개념이나 측정 방식이 국내의 그것과 부합하지 않거나(5.2.1, 5.2.2), 관련 통계가 없어(5.3.1, 5.6.1) 제공이 어려운 경우다. 특히, 5.2.1.의 '친밀한 파트너' 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부족하여 유사한 통계의 제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향후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실태조사(5.2.1) 또는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 범죄통계(5.2.2)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표 3-6> 목표 5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5.1.1*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	미수록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 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연령별 및 폭력형태별 비율	미수록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연령별 및 사건발생장소별 비율	미수록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미수록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의 연령별 비율	미수록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의 비율(성, 연령, 지역별)	수록
5.5.1	(a) 여성 국회의원 비율 (b) 여성 지방의원 비율	수록
5.5.2	여성 관리자 비율	수록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비율	미수록
5.6.2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미수록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권한 소지자 중 여성의 비율(보유형태별)	미수록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미수록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수록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미수록

주: * 해당 국제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않음.

바. 목표 6 -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SDGs의 여섯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이다. 물과 관련된 지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초 서비스로서의 접근성(6.1.1)과 위생시설의 구비 여부(6.2.1) 등의 미시적 차원의 지표를 포함하여, 환경적 관리측면에서의 수질 관리(6.3.1, 6.3.2) 그리고 보다 거시적 차원의 물 이용성(6.4.1, 6.4.2), 통합 수자원 관리(6.5.1, 6.5.2), 수생태계 보호(6.6.1)까지 매우 다차원적인 측면

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지표로는 물과 위생을 위한 ODA 규모(6.a.1), 참여적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비율(6.b.1)로 구성되어 있다. 총 8개 세부 목표에 11개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글로벌 DB에서 제공되는 한국 데이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들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3-7> 참조). 다만, 대부분의 지표가 공식 통계보다는 정책 부처의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료제공 시 국제기구와 소관 부처의 협의와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3-7> 목표 6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수록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수록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수록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수록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의 변화	수록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수록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수록
6.5.2	물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지역 비율	수록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수록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미수록
6.b.1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의 비율	미수록

사. 목표 7 -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에너지 접근성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목표 7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5개의 세부 목표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SDGs의 17개 목표 중 가장 적은 수의 지표를 갖고 있다. 이 중 수단적 지표인 7.a.1(개발도상국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제 자금의 흐름) 및 7.b.1(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모니터링 대상 지표는 4개이다. 현재 글로벌 DB에 수록된 한국 데이터는 4개 지표 모두 해당하며, 개도국 지표인 7.b.1에도 데이터는 수록되어 있다. 대체로 2017~2018년 데이터까지 수록되어 있어, 17개 목표 중 지표 모두에 한국 데이터가

수록된 유일한 목표이다.

<표 3-8> 목표 7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수록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수록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수록
7.3.1	에너지 집약도(GDP 대비 1차 에너지 공급량)	수록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미수록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수록

아. 목표 8 -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SDGs의 여덟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다. SDGs 경제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목표 중 하나로 총 12개의 세부 목표와 1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성장과 자원 효율성(8.1.1, 8.2.1, 8.4.1, 8.4.2, 8.9.1)이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고용 및 일자리 지표는 8.3.1, 8.5.1, 8.5.2, 8.6.1, 8.7.1, 8.8.1, 8.8.2, 8.9.2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제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금융 기반으로서의 지표(8.10.1, 8.10.2)와 수단적 지표로서의 '무역에의 원조(8.a.1)', 'ILO 고용협약 이행 여부(8.b.1)' 등이 있다.

현재 목표 8에 해당하는 한국 데이터는 절반 정도가 수록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기존의 국가통계(국민계정(8.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8.5.1), 경제활동인구조사(8.5.2), 산업재해현황(8.8.1), 공적개발원조통계(8.a.1))를 기반으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8.6.1의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의 비율(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NEET 통계)은 국내의 개념과 정합성이 낮아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물질발자국(8.4.1), 물질소비량(8.4.2) 등과 관련된 지표는 해당 부처에서의 개념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도 개발개선 작업을 통해 자료제공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9> 목표 8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수록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수록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미수록
8.4.1	물질발자국, GDP 및 1인당 물질발자국	미수록
8.4.2	국내 물질 소비량, GDP 및 1인당 물질소비량	수록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수록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수록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 비율	미수록
8.7.1	5-17세 아동 중 아동노동인구와 비율(성 및 연령별)	미수록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성 및 이주상태별)	수록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 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미수록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비율	미수록
8.10.1	(a) 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 성인 10만 명당 ATM의 개수	수록
8.10.2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수록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수록
8.a.1	무역원조(Aid for Trade) 약정 및 지불액	수록
8.b.1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및 운영여부 -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 인지 여부	미수록

자. 목표 9 - 사회기반시설, 사업화 및 혁신

경제부문에 대한 두 번째 목표인 9번은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초 인프라(9.1.1, 9.1.2, 9.4.1), 생산성(9.2.1, 9.2.2, 9.3.1, 9.3.2, 9.b.1) 및 과학기술 역량(9.5.1, 9.5.2, 9.c.1),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투입 지표(9.a.1) 등을 주요 축으로 하고 있다. 총 8개의 세부 목표와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내의 가용한 자료로는 데이터 제공이 어려운 지표(9.1.1, 9.3.2)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가 제공 중에 있다. 주 자료원으로는 국토교통통계(9.1.2), 화물운송실적(9.1.2), 국민계정(9.2.1, 9.b.1), 경제활동인구조사(9.2.2), 산업동향조사(9.3.1), 연구개발활동조사(9.5.1, 9.5.2) 온실가스배출통계(9.4.1) 등이며, 해당 지표들은 향후에도 제공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0> 목표 9 해당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미수록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운송수단별)	수록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수록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수록
9.3.1	총 산업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수록
9.3.2	부채 혹은 신용한도가 있는 소규모 사업체 비율	미수록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록
9.5.1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	수록
9.5.2	인구 1백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	수록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공적지원(ODA+기타공적지원)	미수록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수록
9.c.1	무선네트워크 이용 가능한 인구 비율(기술별)	수록

차. 목표 10 - 불평등 해소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SDGs 10번은 목표 1번과 더불어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불평등의 완화, 차별적 제도의 철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총 10개의 세부 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2020 종합개편에 따라 이중 3개 지표(10.4.2, 10.7.3, 10.7.4)는 신규 지표로 포함되었다. 다른 지표에서는 볼 수 없는 이주(migration) 및 난민 관련 지표(10.7.1, 10.7.2, 10.7.3, 10.7.4, 10.c.1)가 별도로 5개 포함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소득과 재분배(10.1.1, 10.2.1, 10.4.1, 10.4.2) 지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현재 글로벌 DB에 수록된 한국 자료의 경우 대부분 국제기구가 기존의 수집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10.4.1, 10.5.1, 10.6.1, 10.a.1)으로 파악되며, 국내 통계와의 연계성이 확인된 자료는 10.b.1에 해당하는 공적개발원조통계이다. 10.3.1의 경우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자료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신규 지표는 글로벌 메타데이터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표 3-11> 목표 10 해당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가구지출 성장률 혹은 1인당 소득 성장률	미수록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별, 연령 및 장애별)	수록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미수록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수록
10.4.2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	수록
10.5.1	금융건전성지표	수록
10.6.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수록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의 비율	미수록
10.7.2	질서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미수록
10.7.3*	국외 이주과정에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의 수	수록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미수록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수록
10.b.1	개발재원 총액(공여국, 수원국 및 유형별)	수록
10.c.1	총 송금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미수록

카. 목표 11 -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SDGs 11번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0개 세부 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개(11.5.1, 11.5.2, 11.b.1, 11.b.2) 지표는 1번 목표에서 살펴보았던 중복 지표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센다이프레임워크' 모니터링 지표에 해당한다. 그 외 지표는 일차적으로 도시 주거의 접근성(11.1.1, 11.3.1, 11.7.1), 인프라(11.2.1, 11.3.2, 11.6.1, 11.7.1)에 관한 지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도시 계획 추진 시의 민주성(11.3.2, 11.a.1)과 도시의 환경과 안전(11.4.1, 11.7.2)에 대한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데이터는 현재 목표 1에서 살펴보았던 중복 지표(11.5.1, 11.5.2, 11.b.1, 11.b.2)와 도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11.6.2)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가 미제공 중이다. 이는 소관 국제기구(UN-Habitat)의 국별 자료수집이 최근에서야 시작되어('20.5월), 국별 자료 현행화가 늦어진 것이 1차적인 이유이다. 11번 지표 중 11.1.1은 주거실태조사(국토부) 등을 통해 제공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다른 미수록 지표들은 국내 공식

통계와의 연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제한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3-12> 목표 11 해당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미수록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미수록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 소모율	미수록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미수록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미수록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수록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	수록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미수록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 가중)	수록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공용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미수록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발생장소별)	미수록
11.a.1	(a) 인구다양성, (b) 토지 균형개발, (c) 지방재정 강화를 고려한 국가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이 있는 국가의 수	미수록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수록
11.b.2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수록

타. 목표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2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1개의 세부 목표와 1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측정하는 12.a.1을 제외하고 국내에는 모두 해당되는 지표이다.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한 제도와 정책(12.1.1, 12.7.1, 12.8.1)과 기업의 역할(12.6.1)뿐만 아니라 물질의 효

율적 활용(12.2.1, 12.2.2, 12.c.1)과 폐기물 관리(12.3.1, 12.4.1, 12.4.2, 12.5.1)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광위성계정 이행(12.b.1)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내 데이터는 주로 물질 관리 및 폐기물 관련 지표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물질발자국에 대한 담당 부처 및 개념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폐기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관광위성계정도 현재 관련 부처에서 개발 중인 단계로 단시간 내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13> 목표 12 해당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수록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발자국	미수록
12.2.2*	국내 물질 소비량,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소비량	수록
12.3.1	(a) 식량손실지수 및 (b) 식량폐기지수	미수록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수록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수록
12.4.2	(a)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수록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수록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미수록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미수록
12.8.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 된 정도	미수록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수록
12.b.1	관광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표준화된 회계방식의 이행	미수록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수록

주: * 중복 지표

파. 목표 13 -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목표로 하는 13번 목표는 환경 부문의 대표적인 목표이고, 세부 목표가 5개, 지표가 8에 불과한 양적으로는 간단한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표가 확정되지 못한 채, 2020 종합개편을 통해 최근에야 구체화되었다. 13.1(자연재해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 세부 목표에 해당하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지표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최근에서야 확정되었다. 신규 지표로 확정된 13.2.1, 13.2.2, 13.b.1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으로 13.2.1과 13.b.1은 동일 지표이며 대상만 달리한다. 13.3.1도 교육 부문의 4.7.1과 동일지표이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는 13.1 세부 목표에 해당하는 지표는 모두 수록하고 있으나 신규 지표에 대해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글로벌 메타데이터도 확정 전이지만 비계량 지표(13.2.1, 13.3.1)일 뿐만 아니라 13.2.2도 온실가스통계 등을 검토하여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4> 목표 13 해당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수록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수록
13.1.3*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수록
13.2.1**	온실가스국가감축목표,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미수록
13.2.2**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미수록
13.3.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 된 정도	미수록
13.a.1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재원 모금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미수록
13.b.1**	온실가스국가감축목표,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소도개발도상국의 수	미수록

주: * 중복 지표
** 2020 종합개편 안 신규지표로 글로벌 메타데이터 미확정

하. 목표 14 - 해양생태계

목표 14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0개의 세부 목표와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 환경과 관련된 지표(14.1.1, 14.2.1, 14.3.1, 14.5.1)와 어족자원 관리에 관한 지표(14.4.1, 14.6.1, 14.7.1)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14.b.1, 14.c.1)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관련 데이터는 30% 정도 제공되고 있는데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제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된 지표(14.5.1)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어업 관련 제도(14.6.1, 14.b.1)에 국한된다. 일부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로 인해 국내 데이터를 바로 제공하기 어려운 지표(14.2.1, 14.3.1, 14.7.1)들은 국제적 기준이 분명해짐에 따라 제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족자원과 관련된 지표(14.4.1, 14.7.1)의 경우 소관 부처의 정책적 이슈로 인해 자료제공이 어려워, 어업생산량 등 유사지표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표 3-15> 목표 14 해당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14.1.1	(a)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수록
14.2.1	생태계 기반 접근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의 수	미수록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미수록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의 비율	미수록
14.5.1	해양면적 대비 보호구역 면적 비율	수록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을 이행하는 국가별 진척도	수록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미수록
14.a.1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비율	수록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규제/정책/제도적인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수록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 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미수록

갸. 목표 15 - 육상생태계

목표 15는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2개의 세부 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 관리 관련된 지표가 15.1.1부터 15.4.2에 해당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차원의 지표(15.5.1, 15.7.1, 15.8.1, 15.9.1, 15.c.1)들이 있다. 15.a.1과 15.b.1은 서로 다른 세부 목표가 있지만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ODA 규모로 지표는 동일하다.

15번 목표는 환경 분야 중에서도 비교적 국내 데이터의 수록 비율이 높은 편이다. 15.7.1과 15.c.1에 해당하는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지표가 미제공 중이다. 이는 지표 소관 국제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에서의 정확한 자료 수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6> 목표 15 해당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15.1.1	전체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수록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비율(생태계 유형별)	수록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수록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수록
15.4.1	산림(악) 생물다양성을 위한 핵심 보호구역 지정면적	수록
15.4.2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수록
15.5.1	적색목록지수	수록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수록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미수록
15.8.1	외래침입종 유입 방지와 통제에 대한 법과 수단을 갖추고 있는 국가의 비율	수록
15.9.1	(a)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켓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의 통합	수록
15.a.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적 이행수단으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수록
15.b.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적 이행수단으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수록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미수록

나. 목표 16 - 평화·제도

SDGs의 16번째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이다. 총 12개의 세부 목표와 2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비교적 양적 규모가 큰 목표이다. 지표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6.1부터 16.5까지는 주로 범죄와 사회안전 지표이며, 16.6에서 마지막 지표인 16.b까지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육성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지표이다. 전쟁과 같은 분쟁 관련 지표(16.1.2), 불법 금융거래(16.4.1), 불법 무기거래(16.4.2), 언론인에 대한 인권침해(16.10.1) 등은 국내의 현 정책적 상황에서는 정합성이 낮아 자료 수집이 어려운 지표들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고 있는 범죄 관련 지표 대부분(16.1.1, 16.1.3, 16.1.4, 16.3.1, 16.3.2, 16.5.1)은 UNODC에서 진행하는 범죄동향조사(UN-CTS) 자료제공 체계를 통해 제공된다. 경찰청 범죄통계 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안전실태조사(구 범죄피해실태조사)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아동(16.2.1), 인신매매(16.2.2), 성폭력(16.2.3)에 대해서는 소관 국제기구가 UNICEF 등으로 UN-CTS 체계와는 다른 수집 방법이 적용되어 국내 자료와의 연계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범죄 관련 통계에 대해서도 국제적 개념의 일치성(16.3.2의 미결수 개념), 조사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16.3.1의 신고 비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제도적 이슈에 관한 지표는 주로 비계량지표이지만, 일부 별도의 설문조사가 필요한 지표(16.5.2, 16.6.2, 16.7.2)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17> 목표 16 해당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연령별)	수록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 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미수록
16.1.3	지난 12개월간(a) 신체적, (b)정서적, (c)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수록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수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미수록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수(성, 연령, 착취형태별)	미수록
16.2.3	18-29세 성인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미수록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수록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수록
16.3.3	지난 2년간 법적 분쟁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인구 비율(방식별)	미수록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미수록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미수록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수록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미수록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대비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	미수록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미수록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의 (a)입법부, (b)행정부, (c)사법부) 보직 분포 비율(연령, 성별, 장애 및 인구집단별)	수록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미수록
16.8.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수록
16.9.1	5세 미만 아동 중 행정 당국에 출생등록된 자의 비율 (연령별)	미수록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미수록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수록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수록
16.b.1	국제인권법의 차별금지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음을 보고한 인구 비율	미수록

다. 목표 17 -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목표 17번은 총 19개의 세부 목표와 2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SDGs 이행과 달성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 특히 개발도상국 대상 공적 재원, 경제적 지원책 등이 해당되며 SDGs 지표 개발개선을 위한 통계역량강화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목표 17 내 제공되고 있는 한국 데이터의 경우, 대체로 기존의 국제기구(IMF, World Bank)들이 관리하고 있던 경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지표(17.1.1, 17.1.2, 17.2.1, 17.3.2, 17.10.1, 17.12.1)다. 통계역량과 관련된 지표(17.18.2, 17.18.3, 17.19.2)도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자료제공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개도국에 지원되는 ODA의 규모나 경제지표와 관련된 17.3.1, 17.13.1, 17.17.1 지표는 현재 미제공되고 있으나 기존의 통계를 통해 제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들이다. 다만, 다소 개념이 모호한 지표(17.5.1, 17.7.1, 17.14,1, 17.18.1)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정확한 개념이 공유되어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8> 목표 17 해당 지표별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지표	지 표 명	수록 여부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수록
17.1.2	예산 대비 조세수입 비율	수록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a) 순ODA 비율, (b)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수록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ODA 및 남남협력의 비율	미수록
17.3.2	총 GDP 대비 송금액 비율	수록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미수록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미수록
17.6.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속도별)	수록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 금액	미수록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수록
17.9.1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 가치(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미수록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수록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	미수록
17.12.1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수록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미수록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미수록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발도상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수록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의 수	미수록
17.17.1	인프라에 투자한 민관협력 규모	미수록
17.18.1	SDGs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역량 지표	미수록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수록
17.18.3	자금출처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는 국가통계계획이 있는 국가의 수	수록
17.19.1	개발도상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수록
17.19.2	(a)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하였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수록

제2절 국내 데이터 제공 및 관리 현황

1. 소관 부처 현황

지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파악의 두 번째 단계로 각 지표별 소관 기관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와의 자료제공 과정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SDGs 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표별 국내 데이터를 생산하는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SDGs 지표의 상당 부분이 통계청이 아닌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다. 국제기구로 자료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프로세스와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통계 생산기관의 명확한 파악과 이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SDGs 글로벌 지표의 지표별 소관 부처 파악은 물론 개별 부처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지표 자료제공 여부 및 자료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표별 데이터 자료원 등을 파악하고 2차로 부처별 소관 지표 및 국내 자료원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 5월~6월 중 총 16개 부처 및 기관[9]을 대상으로 공문 및 유선 협의를 통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였고, 지표별 구체적인 제공 사항(국내 자료원, 제공 항목 등)은 해당 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기관(연구원, 공단 등) 등을 통해 협의하였다.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은, ①지표별 소관 여부 확인, ②지표별 자료제공 가능 여부, ③제공되는 국내 데이터의 자료원, ④지표나 일부 항목의 미제공 시 사유, ⑤기존의 국제기구 자료제공 여부, ⑥지표 담당자 연락처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지표별로 제출하도록 하였다(부록 2 참조).

소관 부처는 기본적으로 각 지표별 정책 관련 부서로 지정하였다. 대체로 지표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 부처가 일치하는 경우, 부처가 직접 또는 산하 기관 등을 통해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 담당 부처와 관련 지표를 생산하는 부처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지표를 통계청이 생산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경우 이미 WHO에 SDGs 보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총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 부처의 자료(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등)를 제공받아 제출하고 있어,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

9)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관세청, 산림청(이상 직제순), 한국은행.

였다. 다만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책 이슈는 부합하나 관련 지표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 주관 부처로 지정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 지표 생산 기관을 주관 부처로 지정하였다(예: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5.1.1)). 하나의 지표에 여러 부처의 의제와 데이터가 연계되는 경우(예: 거시경제 지표, 국회의 여성 의석 비율과 지방정부의 여성 의원 비율 등)는 다부처 지표로 분류하고 국제기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비스하는 지표 중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글로벌'로 지정하였다(예: 국제빈곤선 미만의 인구비율(1.1.1)). 현재 글로벌 메타데이터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재 시점에서 지표 소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미정'으로 분류하였다. 소관 부처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도 있으며 향후 지표의 변동 또는 글로벌 메타데이터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표의 자료원 등이 바뀌는 경우, 소관 부처도 변경될 수 있다.

<표 3-19> 부처별 소관 지표 수 및 주요 관련 통계 ('20. 6. 20. 기준)

부처명	지표 수	주요 관련 통계 및 자료
보건복지부	32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초생활수급현황 등
환경부	26	상수도통계, 온실가스배출통계 등
통계청	21	사망원인통계, 생활시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교육부	12	교육기본통계, PISA, PIAAC, TIMSS 등
국무조정실	11	공적개발원조통계
행정안전부	11	센다이 프레임워크
고용노동부	1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업재해현황 등
국토교통부	9	토지소유현황, 주거실태조사, 부동산거래현황 등
해양수산부	9	어획량조사, 해양보호지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연구개발활동조사 등
한국은행	7	국민계정, 지급결재통계 등
산업통상자원부	7	에너지수급통계 등
여성가족부	5	가정폭력실태조사 등
산림청	5	산림기본통계, 임업통계연보,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외교부	4	개발협력효과성측정파트너십(GPEDC) 등
법무부	4	난민통계 등
국가인권위원회	4	국가인권실태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3	농업 지출, 농업 지역 등
문화체육관광부	2	관광위성계정
농촌진흥청	2	동식물유전자원수(DAS-IS)

부처명	지표 수	주요 관련 통계 및 자료
기획재정부	1	재정통계
문화재청	1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출
조달청	1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	정보의 자유 관련 법령 등
다부처	20	거시경제지표 등
글로벌 지표	11	국제 빈곤선 지표 등
개도국 지표	11	개발도상국 대상 지표 또는 국내 정책정합성 낮은 지표
미정	10	글로벌 메타 미확정 등으로 부처 미지정
합 계	247	

<표 3-19>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부처별 소관 지표 현황이다. 분석 결과, SDGs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통계청을 제외하고 23개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개별 부처 소관 지표 수로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표가 32개로 가장 많으며, 환경부가 26개로 규모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계청 관련 지표는 21개에 해당하나, 주요 정책 부처에서 제공하는 통계청 관련 자료까지 포함하면 관련 지표가 34개에 달한다.

2. 자료제공 현황과 실태

가. 지표별 자료 생산 여부 및 자료원

부처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던 두 번째 내용은 각 지표별 국내 통계의 생산 여부 및 자료원이다. 이미 글로벌 DB에 수록되고 있던 지표들의 경우 정확한 국내 자료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지표가 어떤 방법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국제기구로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자료들이 유엔에서 제시한 글로벌 메타데이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국내 자료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현재 한국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는 지표 중 국내 자료원이 명확한 지표는 비계량지표까지 포함하여 약 100개에 해당한다. 그 외 30여 개의 지표는 국제기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관련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도 정확한 국내의 자료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표 3-20>은 현재 데이터가 글로벌 DB에 수록되어 있지만 관련 부처로부터 정확한 자료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 예시다.

<표 3-20> 국내 자료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 예시

지표	지 표 명	사 유
1.3.1	사회적 보호 최저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의 성·특수아동·실업자·노령자·장애인·임산부·신생아·산업재해피해자·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ILO Social Security Inquiry 자료이나 국제기구 자체 자료로 국내 자료원 파악 불가
6.4.1	물 이용 효율성의 변화	관련 부처에서 정확한 자료원 파악 불가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선 비율	관련 부처에서 정확한 자료원 파악 불가

나. 자료제공 방식

부처 조사를 통해 자료제공의 방식도 검토해보았다. 조사 결과, 국제기구로 자료가 제공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첫째, SDGs와는 별개로 기존에 이미 국제기구가 국별로 데이터를 수집해온 경우다(<표 3-21> 참고). 이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자료수집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별 자료수집 부담을 경감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SDGs 지표의 상당 부분을 기존의 국제기구 자료제공 체계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 역시 많은 지표들이 기존에 국제기구 자료제공 체계 내에서 제공되던 경우이다.

두 번째로, SDGs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지표에 수록되는 데이터들이 기존의 수집 체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국별 SDGs 연락관(NFP) 또는 관련 부처로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다. 보건복지부의 목표 3 관련 자료제공 형태가 여기에 속하며, 통계청 SDGs NFP가 요청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3-21> 기존의 국제기구 자료제공 체계를 활용한 지표(일부)

지표	국제기구 자료명	소관 부처
2.5.1, 2.5.2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S-IS)	농촌진흥청
8.a.1, 10.b.1.17.2.1,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Database	국무조정실
14.5.1, 15.1.2, 15.4.1	IUCN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	환경부 등
14.6.1, 14.b.1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해양수산부
15.1.1, 15.2.1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산림청
16.1.1, 16.1.3, 16.1.4, 16.3.1, 16.3.2, 16.5.1	UN-Crime Trends Survey(CTS)	통계청

다. 미수록 지표 현황

부처별 설문자료를 통해 현재 미제공되는 한국 자료에 대한 향후 제공 가능성 및 미제공 사유를 파악하였다. 주요 미제공 사유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관련된 지표를 전혀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12.b.1의 '관광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표준화된 회계방식의 이행'은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s)'을 기반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 계정이 작성되지 않아 제공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제기구가 제시한 지표의 개념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작성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러한 지표는 주로 목표 5(성평등) 또는 환경 관련 지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표명에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14.2.1)', '친밀한 파트너(5.2.2)', '합의된 대표표본 추출 지점(14.3.1)', '충분한 정도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5.6.1)'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자료를 매칭하기 어렵고 신규 데이터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다.

<표 3-22> 미제공 사유 주요 예시

지표	지표명	미제공 사유
4.c.1	(a)유아, (b)초등, (c)중학교 및 (d)고등학교 교사 중 국가가 요구하는 특저 수준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교원 교육 및 훈련을 임용 전 혹은 재직 중 받은 교사의 비율	해당 지표에 대한 국내 자료 수집방식과 담당 국제기구와의 자료 수집 **방법론 차이**로 미제공
5.2.2	15세 이상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연령별 및 사건발생장소별 비율	'친밀한 파트너'의 **기준과 개념이 불분명**하며, 국내 기준(조사대상 연령)에 맞지 않음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빈도(성별, 이주상태별)	**비치명적 산업재해 기준**이 ILO 보고기준은 휴업재해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요양재해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어 **맞지 않음**
9.1.1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해당 **항목을 조사하지 않음**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의 비율	해당 자료제공 시 인접국과의 **어업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있음
15.3.1	전체 국토면적 대비 훼손된 토지면적 비율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폐허기준을 산정하는 '토지생산성' **자료를 생산하지 않음**

셋째로,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지표와 유사한 통계가 있으나 기준이 다르거나 작성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 제공하지 않는 경우다. 지표 8.8.1에는 국내 통계 중 산업재해현황을 제출하고 있는데 치명적 재해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나 비치명적 재해에 대한 기준이 ILO와 달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체 국토면적 대비 훼손된 토지면적 비율(15.3.1)의 경우도 훼손된 토지를 계산하는 항목을 아직 작성하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 넷째로, 우리나라에 정책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 경우다. 이는 SDGs 지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아우르는 지표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정책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생산하지 않고 있는 통계이거나 자료를 제공 시 정치적 또는 외교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제공하지 않는 경우다. 주요 미제공 사유별 예시는 <표 3-22>에 설명하였다.

제3절 주요 시사점

이 장에서는 SDGs 데이터 제공체계 구축에 앞서 이를 위해 현재 글로벌 SDG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 데이터의 수록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부처별 자료제공 현황, 미제공 자료에 대한 사유 등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글로벌 DB에 수록된 한국의 데이터는 전체 지표 중 약 54%로 앞서 2장에서 파악된 주요 국가들의 가용성 평가 시 나타난 초기 제공률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부처와의 협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미제공 되는 지표 중 향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표는 약 50개로 향후 제공률을 60~70%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표별로 수록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건(목표3), 교육(목표4), 에너지(목표7) 등의 지표는 국내 자료의 수록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목표11), 환경(목표 13, 14), 제도(목표 16) 등의 분야에서는 자료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SDGs의 특성상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상당 수 부처와의 협력을 필요로 함을 부처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소관 부처 지정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자료원과 제공 방식 등을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제공의 행태는 향후 통계청이 SDGs의 국내 총괄 기관으로서 지표 모니터링 시 자료의 제공 성격 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부처와의 소통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와 개별 부처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자료 제공률을 높이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SDGs 데이터 제공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제공 중인 자료의 관리 방안

1. 유형별 관리 방안

제4장에서는 앞서 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난 SDGs 지표의 국내 데이터 수록현황 및 제공 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SDGs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제공 방식과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데이터의 제공, 관리 및 모니터링 방식을 제안한다. 데이터의 제공은 네 가지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1, 2 유형은 국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유형 3은 국제기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가. 1유형 – 통계청 SDGs National Focal Point (NFP)로 요청하는 경우

국제기구가 국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첫 번째 유형으로, 통계청의 SDGs 지표 담당관(NFP)에게 요청이 오는 경우다. 국제기구가 기존에 국별 소관 부처와의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SDGs 지표 데이터를 새로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한다. 국제기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표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일부 한국 데이터가 수록되지 않은 지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표에 대한 자료 작성을 요청하는 등, 요청의 형태는 다양하다. 다만 국제기구별로 자료수집의 패턴이나 일정 등이 차이가 많아서 언제 국제구기로부터 데이터 요청이 들어오고, 협의를 하게 될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NFP로 자료요청이 오는 경우, 통계청 NFP는 지표 소관 부처 및 생산 기관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제공된 자료를 취합한 후 국제기구로 회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관 기관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자료(글로벌 메타데이터 등)를 공유하고 자료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소관 부처에서 요청 자료를 미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향후 제공 가능성 등에 대해 협의하여 자료제공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표 4-1> 1유형 주요 예시

국제기구	요청사항	처리 결과
OHCHR	10.3.1(16.b.1) 지표(국제인권법 차별금지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음을 보고한 인구의 비율	소관 부처(국가인권위)의 협조를 받아 조사표 작성 및 영문 번역 후 회신('20.3월)
UNODC	UN-CTS에 해당하는 지표(목표 16번)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UN-CTS Focal Point(통계청 기준과)를 통해 소관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 작성 후 제출('20.3월)
UN-Habitat	소관 지표(8개, 도시 부문)에 대한 국별 자료 작성 요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협조하여 자료 작성 후 송부 예정('20.6월)

나. 2유형 - 국제기구가 소관 부처로 SDGs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국별 자료요청 유형의 두 번째는 국제기구가 부처 담당자에게 직접 SDGs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서태평양 지역 SDGs 보건 지표를 담당하는 WHO West Pacific 지역사무소(WPRO)에서 1년에 한 번씩 SDGs 3번 목표에 해당하는 지표와 다른 목표의 보건 관련 지표 한국 데이터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요청한다. 보건복지부는 지표별로 관련된 자료를 통계 생산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취합하여 국제기구로 회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번 유형은 정책 부처가 SDGs 보고 체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해당 부처의 담당자가 국제기구로 보고 시 통계청 NFP에게 제공 사항이 공유되지 않을 경우, 자료 총괄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번 유형의 경우 각 부처가 국제기구로 자료 보고 시 통계청 NFP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자료제공 과정에서 현황 파악이 누락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2> 2유형 주요 예시

국제기구	요청사항	처리 결과
WHO WPRO	목표 3(건강과 웰빙) 및 보건 관련 지표에 대한 한국 데이터 작성 요청	보건복지부 통계부서에서 지표별 통계 생산기관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수합하여 회신

1, 2 유형에 속하는 지표들은 대부분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국제기구 자료제공 시스템(KODAPS)'에서 제공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국제기구는 기존의 자료제공 체계 내에서 SDGs 지표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자료제공 여부를 대부분 KODAPS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의 용이함이 있다. 다만 어떤 항목이 SDGs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 내에서 SDGs 지표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추가하여 별도 분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 3유형 - 국제기구가 자체 작성하는 자료

국제기구 자료제공의 마지막 유형은 국제기구가 자체적인 자료원 등을 활용하여 한국 데이터를 작성 및 서비스하는 경우다. 소관 부처에서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며 국제기구가 다른 국제기구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자료다. 이러한 경우, 국제기구가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는 세계은행이나 IMF가 작성하는 거시경제 지표 등이 해당한다. 다만, 국제기구가 한국 데이터가 없어 자체 방법론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를 잘못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이러한 지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정책 소관 부처를 통해 1차적으로 자료 검토 요청을 하고 명확한 자료원이 파악되지 않거나, 데이터 값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 소관 국제기구로 문의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표 4-3> 3유형 주요 예시

지표	지표명	국제기구
1.1.1	국제빈곤선 미만의 인구비율	World Bank
10.5.1	금융건전성지표	IMF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대비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	World Bank
15.4.2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FAO

2. 제공된 자료의 모니터링 방안

SDGs 지표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제공과 더불어 이미 제공된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SDGs 데이터 모니터링의 대상은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SDGs 한국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주요 출판물들이다.

이중에서 일차적 대상은 유엔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10]이다. 유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각국의 지표별 데이터가 수합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곳에 수록된 각국의 데이터는 개별 국제기구, 지역별 유엔 기구 등의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져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데이터 진척상황을 평가하는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와 같은 민간 기구에서도 유엔의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작성한다. 따라서 유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내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자료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은 1차적으로 통계청 NFP 차원에서 검토한다.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지표별 데이터의 현행화 여부를 체크하여 관련 부처 및 생산 부서에 공유하고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 비교자료나 다른 국제기구 플랫폼으로 연계된 자료들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데이터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국제기구에 자료 수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표 4-4> 글로벌 DB 모니터링 및 피드백 예시

지표	지표명	처리 결과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해당 지표 데이터의 인권위원회 공식 영문명칭 오류 → 소관 국제기구에 정정 요청('20.3월)

유엔 글로벌 DB 외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이트는 UNESCAP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SDGs 데이터베이스(dataexplorer.unescap.org), SDSN에서 관리하는 플랫폼(dashboards.sdgindex.org) 등이다.

SDGs 데이터는 유엔 및 국제기구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되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별 보고 또는 지표별 진척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주요 발간물에도 수록된다.

10)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특히 국제기구 보고서에는 각 부문별 유엔 SDGs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각국의 지표별 진척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등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자료들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보고서의 경우 데이터에 대한 사전 검토는 어렵다. 그러나 사후 발간된 우리나라 관련 SDGs 보고 사항들을 검토하여 국제기구가 활용한 우리나라의 SDGs 자료가 정확하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SDGs 지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고 향후 보고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혼선을 피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주요 보고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결과는 필요시 향후 운영 예정인 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작성기관과도 공유하여 SDGs 지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유엔, “SDG Report” (매년)
- OECD,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 An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매년)
- UNESCAP,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매년)
- SDSN,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매년)

제2절 미제공 자료 관리 방안

1. 유형별 관리 방안

앞서 현재 한국 데이터의 가용성 평가에서 나왔듯이 약 40%의 지표가 미제공 상태이다. 유럽의 국가들도 가용성 평가 초기에는 제공되는 지표가 전체 중 50%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표 관리의 시작 단계에 있는 한국의 경우 데이터 제공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세분화된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제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미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부처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3장의 현황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파악이 되었으나, 향후 국제기구로부터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 부처의 판단에 따라 미제공 지표가 새로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지표 소관부처에서 국제기구로의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

하는 경우 통계청의 NFP도 자료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 또한 데이터의 제공이 정책적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처를 통한 강제적인 자료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정책적 결정이 아닌 지표 데이터의 부재 등으로 미제공되는 경우 대체되는 지표를 선정하거나 대체 지표의 데이터의 제공하는 이슈들은 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미제공되는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가. 1유형 - 국내의 정책적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

현재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지표 중에는 국내의 정책적 이슈와 관련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거나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가 즉각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경우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의 우선 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자료제공을 위한 개선·개발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표 4-5> 1유형 주요 예시

지표	지표명	국제기구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의 연령별 비율	UNICEF
7.b.1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IEA
16.1.1	인구 10만 명당 분쟁 관련 사망자수의 성, 연령 및 사유별 현황	OHCHR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에 따라 유관 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UNODC

나. 2유형 - 소관 부처에서 자료제공 의사가 없는 경우

2유형에 속하는 자료들은 자료 생산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부처에서 여러 정책적 판단의 사유로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료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자료제공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 4-6> 2유형 주요 예시

지표	지표명	국제기구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 비율	ILO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의 비율	FAO

다. 3유형 – 현재 생산되지 않는 통계나 항목이 있는 경우

3유형에 속하는 자료들은 지표가 국내의 정책 정합성은 있지만 아직 관련된 통계 또는 항목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된 통계가 있어도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항목을 작성하지 않거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각국의 정책 수단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하는 비계량 지표들 중 아직 미제공되고 있는 지표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명확한 항목 제공은 어렵더라도 유사한 지표나 통계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한다.

<표 4-7> 3유형 주요 예시

지표	지표명	국제기구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WHO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성별, 이주상태별)	ILO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의 비율	FAO

2. 미제공 자료의 개선·개발 방안

앞서 제시된 미제공 자료의 유형 중 3유형에 속하는 미제공 자료들은 향후 개선 개발 과정을 거쳐 제공을 고려해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미제공 지표 중 자료제공률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으로 유사통계 제안이 있다. 글로벌 메타데이터와의 개념 정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유사한 개념과 방법으로 작성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표 3.7.1(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의 경우, 국내에서 산출되는 유사한 통계는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다. 이 조사에는 15-49세 '기혼 유배우 여성'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과 모집단의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조사 대상 기간도 차이가 있어 국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피임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므로 활용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승인통계인 경우, 1차적으로는 국내 SDGs 플랫폼[11]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향후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의 제공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해볼 수 있다.

미제공되는 지표의 제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별도의 조사 또는 기존 조사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지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통계나 정책 자료 내에서 관련된 지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국제기구가 지표 데이터 생산을 위해 글로벌 메타데이터를 통해 특정 설문 문항들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기존의 조사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6.7.2(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의 성별, 연령별, 장애 및 인구 집단별 비율) 및 16.6.2(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지표는 소관 국제기구인 유엔개발기구(UN Development Programme, UNDP)가 별도의 설문조사를 개발하여 국별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 글로벌 설문조사가 확정되면 기존의 유사 조사 또는 신규 조사를 통해 국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미승인 통계 또는 미승인 항목으로 분류되어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통계청 훈령 제529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제공 가능성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계 부처와의 제공 여부를 협의하고 필요시 통계청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의 조사방식을 뛰어 넘어 새로운 혁신적 방법을 적용하여 지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GIS나 빅데이터, 행정자료 등 다양한 출처 자료의 연계 등을 통해 별도의 조사 없이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 일이 가능하다. 통계개발원 SDG데이터연구센터는 데이터 세분화를 중장기 추진 사업으로 결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11.2.1(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과 11.7.1(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 지표를 교통 빅데이터와 인구센서스(지표 11.2.1), 용도지역정보자료와 도로명주소 기본도(지표 11.7.1) 등을 활용하여 시범 생산하였다(박영실 외, 2019). 2020년에는 1.3.1(인구성장률 대비 토지소모비율) 지표를 혁신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지표를 생산할 계획이다. 시범 생산한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통계포털 및 SDG 국내 플랫폼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11) 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제3절 자료제공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유관 부처 협업체계 구축

앞 장의 부처별 자료제공 현황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글로벌 SDGs 지표는 범부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현행화,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미제공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개발 개선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처별 담당관 지정과 주기적 협의체 운영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부처별 지표 담당관 지정

지표에 대한 부처별 주인의식(ownership)과 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부처별 SDGs 지표 담당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은 통계개발원의 SDG데이터연구센터가 담당하겠지만 각 부처별 담당관의 지정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해 두어야 향후 SDGs 지표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각 부처에서 소관하는 지표별 생산 기관과 통계청 NFP 사이에서 소관 부처의 지표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SDGs 지표 담당자의 주요 역할은 통계청 SDG데이터연구센터와 협업하여, ①해당 지표의 유엔 글로벌 DB의 자료 체크, ②국제기구로의 자료제공 시 자료 작성 및 검토, ③지표 개선 및 개발 협의, ④지표의 모니터링에 있어 필요한 통계적·정책적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주기적 협의체 개최

부처별로 담당관과 생산 기관의 담당자를 지정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인사이동 등에 따른 담당자들의 교체로 업무 인수인계 등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SDGs 지표 모니터링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 NFP와의 1대 1의 방식 외에도 지표 관리 현황 및 부처별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지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SDGs 지표에 대한 인식제고와 현황 공유다. 협의체에 참석하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 대상으로 SDGs에 대한 배경 지식과 글로벌 수준에서의 SDGs 이행 현황, 국내 이행 수준 등을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매년 발간되는

통계개발원의 ‘SDGs 이행보고서’도 해당된다. 이를 통해 SDGs 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담당자에게는 이해도를 높이고 기존에 업무를 지속해온 담당자에게는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동기부여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SDGs 데이터 공동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유다. 여기에는 각 부처 담당자들이 SDGs 지표 관리를 위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자료제공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처의 역할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표 협의체 운영은 지표 담당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1차례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시기는 SDGs 이행보고서 발간 시기(3월 말)와 맞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전년도에 현행화된 지표 데이터 공유 및 글로벌, 국내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도 시의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2. 지표 전문가 및 민간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SDGs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나 지표 생산 기관과의 협업 외에도 각 부문의 전문성을 가진 지표 전문가와 민간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지표 전문가들은 현재 제공되는 한국 데이터의 자료원 그뿐만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자료, 미제공 자료에 대한 새로운 자료원 개발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다. 현재 지표별로 각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고 1년에 두 차례 대면회의를 통해 지표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시 각 부처의 담당관 또는 생산 기관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표 관리와 모니터링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는 소규모 전문가 그룹 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다.

SDGs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행을 점검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지표 모니터링에 있어 시민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시민사회는 자발적국가보고의 시민사회 버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SDGs 지표 데이터를 활용하는 중요한 이용자 그룹에 해당한다. 또한 지표 활용 과정에서 정책적 이슈를 제기하고 그와 반대로 정책적 이슈에 따른 지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지표 이용자 그룹으로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SDGs의 이행과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의 SDGs 데이터를 국제기구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과 3장에서 각각 글로벌 SDGs 데이터 수집 및 관리현황과 SDGs 국내 데이터 제공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4장에서 SDGs 데이터 제공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유엔 차원에서 마련한 SDGs 데이터 흐름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데이터 제공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SDGs가 공식적인 통계원칙에 기반하여 생산된 데이터와 통계를 근간으로 하며, 국가통계시스템과 국제기구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 비교가능성 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통계청은 국가통계시스템 내에서 조정 역할과 함께 국제기구와의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관리뿐 아니라 국가보고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의 통계청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SDGs 이행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내에서 지표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국제기구 또한 각국 통계청을 매개로 하여 지표별 데이터 출처를 식별해 내고, 검증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기구 및 지표 특성, 국가 상황 등에 따라 데이터 흐름은 약간씩 차별적이었다.

3장에서는 현재 유엔의 글로벌 SDG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제공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47개 지표 중 국내 맥락에 적용되지 않는 지표를 제외하고 140여 개의 지표에 국내 데이터가 수록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약 100여 개의 지표에는 아직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목표별로 제공률을 보면 3번(보건), 7번(에너지), 9번(산업), 15번(육상생태계) 목표에는 자료 수록 비율이 높은 편이나, 5번(성평등), 10번(불평등), 11번(도시),

16번(평화·제도) 목표는 자료 수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지표의 국내 소관부처는 현재 23개 부처로, 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그간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지표들의 사유를 보면, 데이터의 생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SDGs 데이터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관리방안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와 미제공 데이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제공 중인 데이터의 관리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데이터가 제공되는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유형은 국제기구가 통계청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유형, 국제기구가 소관부처로 SDGs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유형, 국제기구가 자체 작성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SDGs 지표 전체의 총괄관리를 위해서 자료제공 과정에 통계청을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의 자체 작성 지표라고 할지라도 국내 검토를 통해 그 값이 국내 맥락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과정을 통해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도 유엔 및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나 보고서 등에서 국내 데이터 값이 오류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미제공 자료의 경우는 국내의 정책적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부처에서 제공의사가 없는 지표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고자 통계 개선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특히, GIS나 빅데이터 등의 혁신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지표 생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과정은 한 범부처 협의체 및 지표 전문가 협의체 등과의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제2절 연구의 함의

전 세계 공동의 목표인 SDGs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행점검을 위한 수단으로서 데이터가 부각되면서, 국제기구와 국가통계시스템 및 통계청 간에 데이터 제공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의 SDGs 데이터 책임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통계청이 국내 SDGs 데이터 거버넌스 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할지를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다. 국내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부처별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제공 실태를 통해 향후 통계청이 SDGs 지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실무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SDGs 지표 소관부처 및 주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기구 자료제공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국제기구 자료제공을 위한 일관된 프로세스를 정립함으로써, 양질의 신뢰할 만한 국내 데이터를 유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국내 데이터 가용성 증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가 제공된 이후에도 국제적 기준과의 개념 정합성, 데이터 오류 등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데이터 정밀성을 제고해 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한국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주는 동시에 SDGs 데이터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영실, 변용찬, 신우람, 장동익, 유인상(2019). 세분화된 데이터 생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탐색: 장애, 도시, 교통부문. **2019년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2019).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통계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Branthomme & Anne(2019). *SDG Indicator 15.2.1 :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Presented at the Regional Workshop on SDG Indicators 7-11 Oct. 2019 (DaNang, Vietnam)

Fabio & Parisi(2019). *SDG Indicator 15.4.2 : the Mountain Green Cover Index*, Presented at the Regional Workshop on SDG Indicators 7-11 Oct. 2019 (DaNang, Vietnam).

FAO(2019). *Report of the national workshop in ROK on SDG Target 2.1*, Internal Document.

IAEG-SDGs(2019a). *Guidelines on Data Flows and Global Data Repor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AEG-SDGs(2019b). *Best Practices in Data Flows and Global Data Reporting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tatistical Commission fiftieth session, Background Document.

Mulholland, E., Dimitrova, A., & Hametner, M.(2018). SDG Indicators and Monitoring:Systems and Processes at the Global, European, and National Level, *ESDN Quarterly Report 48*, April 2018, ESDN Office, Vienna.

Navarro, Dorian & Kalamvrezos(2020). Training Program of AITRS for 2018-2019 within the Framework for Developing Statistics that Support the SDGs 2030 in the Arab Region, www.fao.org (인출일 2020.6.17.)

OECD(2019). *Governance as an SDG Accelerator : Country Experiences and Tools*,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0666b085-en.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20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gress and possibilitie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2018a). UK Data Gaps:Inclusive Data Action Plan towards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2018b).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UK, an update on progress: November 2018.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2019).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UK: progress on monitoring and reporting data: November 2019.

Statistics Netherlands(2017). *Measuring the SDGs: an initial picture for the Netherlands*. Statistics Netherlands.

Statistics Netherlands(2018).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ituation for the Netherlands*. Statistics Netherlands.

Statistics Sweden(2017). *Statistical Follow-up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Executive Summary*. Statistics Sweden.

Statistics Netherlands(2019).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in Sweden:Statistical Review 2019*. Statistics Sweden.

UNSC(2019).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2019* (E/CN.3/2019/2)

UNSC(2020). *Work for the review of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20* (E/CN.3/2020/3)

부 록 1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1.2	각국의 빈곤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1.5.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 동원 보장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1.b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	2.1.1	영양부족인구 비율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으로 중간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곤층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경험인구 비율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개선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여부별)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가	2.3.1	노동 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2.3.2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소득(성 및 원주민여부별)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문,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을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을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 수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농업지향지수
		2.a.2	농업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2.b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품 보조금 철폐를 포함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2.b.1	농업수출보조금
2.c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3.1	2030년까지 모성사망비를 출생아	3.1.1	모성사망비

세부 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십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천 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천 명당 최소 25명 이하 목표	3.2.1	5세 미만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천 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특성별)
		3.3.2	인구 1십만 명당 결핵 발생건수
		3.3.3	인구 1천 명당 말라리아 발생건수
		3.3.4	인구 1십만 명당 B형간염 발생건수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 사망률
		3.4.2	자살률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하여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범위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천 명당 출산율
3.8	재정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보장 서비스 제공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범위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		출액
		3.b.3	적정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을 상당 수준 증가	3.c.1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	4.1.1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4.4	2030년까지 전문. 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유형별)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4.5.1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별)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	4.7.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	4.a.1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 유형별)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4.b.1	장학금의 ODA 금액(연구부문 및 연구유형별)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4.c.1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교육단계별)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별)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5.4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보호정책의 제공과 가구 및 가족 내 책임부담 촉진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5.5.1	(a) 여성 국회의원 비율 (b) 여성 지방의원 비율
		5.5.2	여성 관리자 비율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문서에 따라 모든 이가 성,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15-49세의 여성비율
		5.6.2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 형태별)
		5.a.2	토지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사용 강화 (특히 ICT)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와 성평등 촉진을 위해 명확한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금지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6.4.2	물 스트레스 수준 :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개도국가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을 확대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7.2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상당하게 증가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7.3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을 두 배 증가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2030년까지 개도국에 현대화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반 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률 유지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8.2	노동집약적 산업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가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8.4.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물질소비량,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GDP당 국내물질소비량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을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근절	8.7.1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8.8.1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태별)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1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8.10.1	(a) 성인 1십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 성인 1십만 명당 ATM의 개수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8.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포함)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9.1	경제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하고,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도국)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함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1백만 명당 연구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9.5.2	인구 1백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하여 개도국가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 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10.2	2030년까지 연령,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10.5.1	금융건전성지표
10.6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도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10.6.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10.7.2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10.7.3	국제이주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10.a	세계무역기구(WTO)협약에 따른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10.b	도움이필요한국가에(최빈개도국, 아프리카국가, 군서도서개발국) ODA, 재원지원, 직접투자권장	10.b.1	개발재원 총액(공여국, 수원국 및 유형별)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시스템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소모율 비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 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6	대기의 질과 지자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을 감소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 가중)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를 지원	11.a.1	(a) 인구다양성, (b) 토지균형개발, (c) 지방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2.1	선진국 주도하에, 개도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12.2.2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12..4.1	(a)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12.6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하고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12.a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2.b.1	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툴 이행
12.c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하여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이행 (이때,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을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함)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13.1	기후 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13.1.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3.2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세부 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13.a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동원 즉각 이행	13.a.1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13.b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커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13.b.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14.1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a)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하여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비율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 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 유형별)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보장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불법야생동식물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및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15.9.1	(a)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다양성의 통합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b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도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삼림 관리를 즈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15.b.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c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16.1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및 연령별)
		16.1.2	인구 1십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a) 신체적, (b) 정서적, (c)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비율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2	인구 1십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 유형별)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을 대폭 감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세부 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	16.7.1	국가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하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신원 제공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16.1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예방 및 테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든 수준, 특히 개도국에서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국내 제도 강화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증진 및 강화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17.1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17.1.2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 순ODA의 비율 2)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17.3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재원 동원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7.4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세부 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6.1	인구 1백 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속도별)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 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카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하여,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17.9.1	개도국에 지원하는 (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지원금액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17.18.1	SDGs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는 국가의 수

세부목표	세부목표명	지표	지표명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 지원 출처별)
17.19	2030년까지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 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 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부 록 2

붙임 3 **SDGs 지표별 자료제공 보고서 (양식)** ※ 지표별 작성

1. 지표명	*(예시) 16.1.1. 인구 10만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 연령별)*		
2. 국내자료 제공 여부	☐ 현재 제공 중이거나 제공 가능 (→3번 항목으로) ☐ 현재 부분 제공* 중이거나 부분 제공 가능 (→3번, 4번 항목으로) * 부분 제공 : 지표 내 일부 항목만 제공되는 경우 ☐ 현재 미제공이며 향후에도 제공이 어려움 (→4번 항목으로) ☐ 기타 (글로벌 메타 미확정으로 판단 불가 등)		
3. 자료제공 현황	제공 통계명	*※ 해당 지표에 대해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국내 공식통계명* *※ 해당 지표에 여러 통계가 활용되는 경우, 해당되는 통계 모두 작성* *※ 제공자료가 공식통계가 아닌 보고자료 수치이거나, 정성적 자료(제도 관련 설문 등)인 경우 별도의 통계명은 필요 없으며, 보고자료명 또는 주요 설문조사 항목 등 기재*	
	승인통계 여부	*※ 제공(가능)한 국내통계의 승인통계 여부(O, X로 표기)*	
	제공 항목	*※ 해당 통계 항목 중 현재 제공 중이거나 향후에도 제공 가능한 항목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	
	기존 국제기구 제공여부	국제기구	*※ 기존에 국제기구로 제공 중이었던 통계자료의 경우, 해당 국제기구명 기입 (예시) OECD*
		제출 DB명	*(예시)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제공방식	☐ 부처(또는 유관기관)에서 직접 제공 ☐ 국제기구 자체 작성으로 별도 관리 대상 아님
4. 미제공 자료 현황	*※ 지표 내 일부 미제공 항목 또는 미제공 지표의 구체적 사유 작성* *(예시) 해당 항목을 조사하지 않음, 개념이나 기준 불분명, 국내 기준에 맞지 않음 등*		
5. 유사 통계 제안 (선택)	*※ 해당 지표와 관련하여 국내 활용 가능한 유사통계가 있는 경우 제안*		
6. 지표 담당자	주관 부처	(소속/부서)	(성명/직위)
		(전화번호/이메일)	
	협조 기관	(소속/부서)	(성명/직위)
		(전화번호/이메일)	

※ 주관부처 : 부처별 SDGs 총괄 또는 지표 총괄 담당자. 총괄 부서가 없는 경우 개별 통계 담당자 작성 가능.
※ 협조기관 : 통계를 실제 생산하는 부서로 주관부처와 상이한 경우. 협조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입.

부 록 3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성·연령·고용상태 및 지역(도시/농촌)별 비율	World Bank ILO	글로벌	수록	국제기구 자료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World Bank	보건복지부 /통계청	미수록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World Bank	보건복지부 /통계청	미수록		
1.3.1	사회적 보호 최저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의 성·특수아동·실업자·노령자·장애인·임산부·신생아·산업재해피해자·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비율	ILO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부분 수록	국제기구 자료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UN-Habitat	글로벌	수록	국제기구 자료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갖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성인 인구의 비율(성별, 보유 형태별)	UN-Habitat	국토교통부	수록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UNISDR	행정안전부	부분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1.5.2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	UNISDR	행정안전부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UNISDR	행정안전부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1.5.4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UNISDR	행정안전부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1.a.1	수원국 내 국민총소득 대비 빈곤감소를 위해 받은 ODA 총액	OECD	개도국 지표	미수록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 (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UNESCO	미정	미수록		글로벌 메타데이터 미확정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미정	미정	미수록		글로벌 메타데이터 미확정
2.1.1	영양부족인구 비율	FAO	보건복지부	부분 수록	국제기구 자료	
2.1.2	식품불안경험척도(FIES) 기준,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food insecurity) 인구비율	FAO	보건복지부	수록	국민건강영양조사	
2.2.1	5세 미만(under) 발육부진 아동 비율	WHO/UNICEF	보건복지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WHO/UNICEF	보건복지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여부별)	미정	보건복지부	미수록		글로벌 메타데이터 미확정
2.3.1	노동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FAO	통계청	미수록		
2.3.2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성 및 원주민여부별)	FAO	통계청	미수록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FAO	농림축산식품부	미수록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	FAO	농촌진흥청	부분 수록	FAO DAS-IS 제출 자료	국내 제공자료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FAO	농촌진흥청	수록	FAO DAS-IS 제출 자료	국내 제공자료
2.a.1	농업지향지수	FAO	농림축산식품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2.a.2	농업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OECD	국무조정실	미수록		
2.b.1	농업수출보조금	WTO	다부처	수록	국제기구 자료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FAO	농림축산식품부	부분 수록		식량가격이상지표 개념 미확정
3.1.1	모성사망비	WHO	보건복지부	수록	사망원인통계	국내 제공자료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UNICEF	보건복지부	수록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국내 제공자료
3.2.1	5세미만 사망률	UNICEF	보건복지부	수록	사망원인통계	국내 제공자료
3.2.2	신생아 사망률	UNICEF	보건복지부	수록	사망원인통계	국내 제공자료
3.3.1	비감염인구 1천 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의 수(성, 연령, 주요 인구특성별)	UNAIDS	보건복지부	미수록	HIV/AIDS 신고현황	국내 제공자료
3.3.2	결핵 발생률(인구 십만 명당)	WHO	보건복지부	수록	결핵환자 등 신고현황	국내 제공자료
3.3.3	말라리아 발생률(인구 1천 명당)	WHO	보건복지부	수록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국내 제공자료
3.3.4	인구 10만 명당 신규 B형 간염 감염자수	WHO	보건복지부	수록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국내 제공자료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WHO	보건복지부	수록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국내 제공자료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WHO	보건복지부	수록	사망원인통계	국내 제공자료
3.4.2	자살률	WHO	보건복지부	수록	사망원인통계	국내 제공자료
3.5.1	약물장애 치료개입 (의약, 사회심리,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범위	UNODC	보건복지부	수록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WHO	보건복지부	수록	국세통계연보	국내 제공자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WHO	보건복지부	수록	사망원인통계	국내 제공자료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UNDESA	보건복지부	미수록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7.2	여성 청소년 (10-14세, 15-19세) 출산률	UNDESA	보건복지부	수록	인구동향조사	국내 제공자료
3.8.1	필수 보건 서비스 보장범위	미정	보건복지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WHO	보건복지부	수록	가계동향조사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WHO	글로벌	수록	국제기구 자료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WHO	보건복지부	수록	사망원인통계	국내 제공자료
3.9.3	비고의적 중독 사망률	WHO	보건복지부	수록	사망원인통계	국내 제공자료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	WHO	보건복지부	수록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내 제공자료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WHO/UNICEF	보건복지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부문 ODA 순지출액	OECD	보건복지부	미수록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3.b.3	적정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WHO	보건복지부	미수록		
3.c.1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WHO	보건복지부	수록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국내 제공자료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WHO	보건복지부	수록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감염율	WHO	보건복지부	수록		
4.1.1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비율	UNESCO	교육부	수록	PISA(읽기) /TIMSS(수학)	
4.1.2	초, 중,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		교육부	미수록	미정	글로벌 메타데이터 미확정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의 성별 비율	UNICEF	교육부	미수록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 (성별)	UNESCO	교육부	수록	교육기본통계	국내 제공자료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성별 비율	UNESCO	교육부	미수록	PIAAC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성인의 비율(기술 유형별)	ITU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수록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국내 제공자료
4.5.1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 등)	UNESCO	교육부	부분 수록	PISA/TIMSS/PIAAC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의 성별 비율	UNESCO	교육부	수록	PIAAC	
4.7.1 (12.8.1) (13.3.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화 정도	UNESCO	교육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4.a.1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는 학교의 비율(서비스별)	UNESCO	교육부	부분 수록	교육기본통계	국내 제공자료
4.b.1	장학금의 ODA 금액(연구부문 및 연구유형별)	OECD	국무조정실	미수록		
4.c.1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교육 단계별)	UNESCO	교육부	미수록	교육기본통계	국내 제공자료
5.1.1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체계 존재 여부	UN Women	통계청	미수록	비계량 자료	국내 제공자료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 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연령별 및 폭력형태별 비율	UN Women/ UNICEF/WHO/ UNODC 등	여성가족부	미수록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연령별 및 사건발생장소별 비율	UN Women/ UNICEF/WHO/ UNODC 등	여성가족부	미수록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UNICEF	여성가족부	미수록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의 연령별 비율	UNICEF	해당 없음	미수록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의 비율(성, 연령, 지역별)	UNSD/ UN Women	여성가족부	수록	생활시간조사	국내 제공자료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5.5.1	(a) 여성 국회의원 비율 (b) 여성 지방의원 비율	ITU/UN Women	다부처	수록	선거통계	국내 제공자료
5.5.2	여성 관리자 비율	ILO	고용노동부	부분 수록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내 제공자료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비율	UNFPA	다부처	미수록		
5.6.2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UNFPA	다부처	미수록	비계량 자료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권한 소지자 중 여성의 비율(보유형태별)	FAO/UN Women	다부처	미수록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FAO/UN Women	다부처	미수록	비계량 자료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ITU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수록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국내 제공자료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UN Women/ OECD/UNDP	여성가족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WHO/UNICEF	환경부	수록	상수도 통계	국내 제공자료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WHO/UNICEF	환경부	부분 수록	국제기구 자료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WHO	환경부	수록	하수도 통계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UNEP	환경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의 변화	FAO	환경부	수록	검토 중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FAO	환경부	수록	검토 중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0-100)	UNEP	환경부	부분 수록	비계량 자료	국내 제공자료
6.5.2	물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지역 비율	UNESCO /UNECE	환경부	수록		국내 제공자료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UNEP	환경부	부분 수록	국제기구 자료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OECD	국무조정실	미수록		
6.b.1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의 비율	WHO	환경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World Bank	산업통상자원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WHO	산업통상자원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IEA/UNSD	산업통상자원부	수록	에너지수급통계	국내 제공자료
7.3.1	에너지 집약도(GDP 대비 1차에너지 공급량)	IEA/UNSD	산업통상자원부	수록	에너지수급통계	국내 제공자료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OECD/IRENA	해당 없음	미수록		개발도상국 지표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7.b.1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IEA	해당 없음	수록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UNSD/OECD	한국은행	수록	국제기구 자료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ILO	다부처	수록	국제기구 자료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ILO	고용노동부	미수록		
8.4.1 (12.2.1)	물질발자국, GDP 및 1인당 물질발자국	UNEP	환경부	미수록		
8.4.2 (12.2.2)	국내 물질 소비량, GDP 및 1인당 물질소비량	UNEP	산업통상자원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ILO	고용노동부	수록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내 제공자료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ILO	고용노동부	부분 수록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내 제공자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 비율	ILO	고용노동부	미수록		
8.7.1	5-17세 아동 중 아동노동인구와 비율(성 및 연령별)	ILO	미정	미수록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성 및 이주상태별)	ILO	고용노동부	부분 수록	산업재해현황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 (성 및 이주 상태별)	ILO	고용노동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국제기구 자체 작성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비율	World Tourism Organization	문화체육관광부	미수록		부처에서 개발 중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8.10.1	(a) 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 성인 10만 명당 ATM의 개수	IMF	한국은행	수록	지급결제통계 등	IMF Financial Access Survey
8.10.2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World Bank	한국은행	수록	지급결제통계 등	World Bank Financial Inclusion DB 자료
8.a.1	무역원조(Aid for Trade) 약정 및 지불액	OECD	국무조정실	수록	공적개발원조통계	국내 제공자료
8.b.1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및 운영여부 –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 인지 여부	ILO	고용노동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World Bank	미정	미수록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운송수단별)	ICAO	국토교통부	부분 수록	국토교통통계연보(국) 화물운송실적(해)	국내 제공자료
9.2.1	GDP·1인당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MVA) 비율	UNIDO	한국은행	수록	국민계정	국내 제공자료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UNIDO	통계청	수록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내 제공자료
9.3.1	총 산업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UNIDO	통계청	수록	산업동향	국내 제공자료
9.3.2	부채 혹은 신용한도가 있는 소규모 사업체 비율	UNIDO /World bank	미정	미수록		
9.4.1	부가가치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UNIDO/IEA	다부처	수록	온실가스배출통계	국내 제공자료
9.5.1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	UNESCO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수록	연구개발활동조사	국내 제공자료
9.5.2	인구 1백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	UNESCO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수록	연구개발활동조사	국내 제공자료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공적지원(ODA+기타공적지원)	OECD	국무조정실	미수록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UNIDO	한국은행	수록	국제기구 자료	
9.c.1	무선네트워크 이용 가능한 인구 비율(기술별)	IT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록	부처 자료	국내 제공자료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가구지출 성장률 혹은 1인당 소득 성장률	World Bank	다부처	미수록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별, 연령 및 장애별)	World Bank	다부처	수록		
10.3.1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OHCHR	국가인권위원회	미수록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ILO	고용노동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ILO AMECO
10.4.2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		다부처	수록		글로벌 메타 미확정
10.5.1	금융건전성지표	IMF	글로벌	수록	국제기구 자료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
10.6.1 (16.8.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비율	UNDESA	외교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의 비율	ILO/World Bank	고용노동부	미수록		
10.7.2	질서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UNDESA	법무부	미수록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0.7.3	국외 이주과정에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의 수	미정	법무부	수록		글로벌 메타 미확정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미정	법무부	미수록		글로벌 메타 미확정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ITC	글로벌	수록	국제기구 자료	글로벌 모니터링 자료
10.b.1	개발재원 총액(공여국, 수원국 및 유형별)	OECD	국무조정실	부분 수록	공적개발원조통계	국내 제공자료
10.c.1	총 송금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World Bank	미정	미수록		글로벌 모니터링 자료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UN-Habitat	국토교통부	미수록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UN-Habitat	국토교통부	미수록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 소모율	UN-Habitat	국토교통부	미수록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UN-Habitat	국토교통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UNESCO	문화재청	미수록		
11.5.1 (1.5.1) (13.1.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UNISDR	행정안전부	부분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1.5.2(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GDP 당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	UNISDR	행정안전부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UN-Habitat	환경부	미수록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 가중)	WHO	환경부	수록	대기오염배출량	국내 제공자료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공용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별)	UN-Habitat	국토교통부	미수록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발생장소별)	UNODC	통계청	미수록		
11.a.1	(a) 인구다양성, (b) 토지 균형개발, (c) 지방재정 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이 있는 국가의 수	UN-Habitat	국토교통부	미수록	비계량 지표	
11.b.1 (1.5.3)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UNISDR	행정안전부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11.b.2 (1.5.4) (13.1.3)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UNISDR	행정안전부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UNEP	산업통상자원부	부분 수록	비계량 자료	
12.2.1 (8.4.1)	물질발자국, 1인당 및 GDP대비 물질발자국	UNEP	다부처	미수록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2.2.2 (8.4.2)	국내 물질 소비량,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소비량	UNEP	산업통상자원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12.3.1	(a) 식량손실지수 및 (b) 식량폐기지수	FAO/UNEP	미정	미수록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수록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UNEP	환경부	부분 수록	비계량 자료	
12.4.2	(a)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UNEP	환경부	부분 수록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UNSD/UNEP	환경부	수록		글로벌 메타 미확정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UNEP	미정	미수록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UNEP	조달청	미수록	비계량 자료	글로벌 메타 미확정
12.8.1 (4.7.1) (13.3.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기후변화교육포함)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주류화 정도	UNESCO	교육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12.a.1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IEA	해당 없음	수록		개발도상국 지표
12.b.1	관광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표준화된 회계방식의 이행	World Tourism Organization	문화체육관광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UNEP	미정	수록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3.1.1 (1.5.1) (11.5.1)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affected)를 받은 인구 수	UNISDR	행정안전부	부분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13.1.2 (1.5.3)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 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UNISDR	행정안전부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13.1.3 (1.5.4) (11.b.2)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UNISDR	행정안전부	수록	센다이 프레임워크	국내 제공자료
13.2.1 (13.b.1)	온실가스국가감축목표,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UNFCCC	환경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글로벌 메타 미확정
13.2.2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미정	환경부	미수록		글로벌 메타 미확정
13.3.1 (4.7.1)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기후변화교육포함)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주류화 정도	UNFCCC	교육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13.a.1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재원 모금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UNFCCC	미정	미수록		글로벌 메타 미확정
13.b.1 (13.2.1)	온실가스국가감축목표,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소도개발도상국의 수	UNFCCC	해당 없음	미수록	해당 없음	개발도상국 지표
14.1.1	(a)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UNEP	해양수산부	수록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4.2.1	생태계 기반 접근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의 수	UNEP	해양수산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UNESCO	해양수산부	미수록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의 비율	FAO	해양수산부	미수록		
14.5.1	해양면적 대비 보호구역 면적 비율	UNEP	환경부/해양수산부	수록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자료	국내 제공자료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을 이행하는 국가별 진척도	FAO	해양수산부	수록	비계량 자료	국내 제공자료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FAO/UNEP	해양수산부	미수록		
14.a.1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비율	UNESCO	해양수산부	수록	부처 자료	국내 제공자료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규제/정책/제도적인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FAO	해양수산부	수록	비계량 자료	국내 제공자료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UNCLOS (OLA/DOALOS)	해양수산부	미수록	비계량 자료	
15.1.1	전체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FAO	산림청	수록	산림기본통계 지적통계	국내 제공자료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비율(생태계 유형별)	UNEP	환경부	수록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자료	국내 제공자료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FAO	산림청	수록	산림기본통계 임업통계연보 국가산림자원조사	국내 제공자료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UNCCD	산림청	수록		
15.4.1	산림(악) 생물다양성을 위한 핵심 보호구역 지정면적	UNEP/IUCN	산림청	수록	국가보호지역통합 DB 임업통계연보	국내 제공자료
15.4.2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FAO	산림청	수록	국제기구 자료	
15.5.1	적색목록지수	IUCN	환경부	수록	검토 중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CBD-Secretariat	환경부	수록	비계량 자료	
15.7.1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UNODC	환경부	미수록		
15.8.1	외래침입종 유입 방지와 통제에 대한 법과 수단을 갖추고 있는 국가의 비율	IUCN	환경부	수록	비계량 자료	국내 제공자료
15.9.1	(a)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켓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의 통합	CBD-Secretariat	환경부	부분 수록	비계량 자료	
15.a.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적 이행수단으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OECD	국무조정실	수록	공적개발원조통계	국내 제공자료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5.b.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적 이행수단으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OECd	국무조정실	수록	공적개발원조통계	국내 제공자료
15.c.1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UNODC	환경부	미수록		
16.1.1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연령별)	UNODC	통계청(CTS) /경찰청	수록	범죄통계	국내 제공자료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 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OHCHR	해당 없음	미수록	해당 없음	분쟁지역 지표
16.1.3	지난 12개월간(a) 신체적, (b)정서적, (c)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비율	UNODC	통계청(CTS)/ 형사정책연구원	수록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내 제공자료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UNODC	통계청(CTS)/ 형사정책연구원	수록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내 제공자료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UNICEF	미정	미수록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수(성, 연령, 착취형태별)	UNODC	미정	미수록		
16.2.3	18-29세 성인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비율	UNICEF	다부처	미수록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UNODC	통계청(CTS)/ 형사정책연구원	수록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내 제공자료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UNODC	통계청(CTS)/ 법무부	수록	교정본부 통계	국내 제공자료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6.3.3	지난 2년간 분쟁(dispute)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인구 비율(방식별)	미정	법무부	미수록		글로벌 메타 미확정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UNODC /UNCTAD	미정	미수록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UNODC /UNODA	해당 없음	미수록		관련국 지표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UNODC	미정	수록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World Bank/ UNODC	미정	미수록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대비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	World Bank	기획재정부	미수록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UNDP	미정	미수록		UNDP가 별도 설문조사 개발 예정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의 (a)입법부, (b)행정부, (c)사법부) 보직 분포비율(연령, 성별, 장애 및 인구집단별)	IPU/UNDP	다부처	수록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UNDP	미정	미수록		UNDP가 별도 설문조사 개발 예정
16.8.1 (10.6.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UNDESA	외교부	수록	국제기구 자료	
16.9.1	5세미만 아동 중 행정 당국에 출생 신고된 비율 (연령별)	미정	다부처	미수록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UNICEF	국가인권위원회	미수록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OHCH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수록	비계량 자료	국별 설문조사 자료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UNESCO	국가인권위원회	수록	비계량 자료	
16.b.1 (10.3.1)	국제인권법의 차별금지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음을 보고한 인구의 비율	OHCHR	국가인권위원회	미수록		제공 예정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IMF	글로벌	수록	국제기구 자료	
17.1.2	예산 대비 조세수입 비율	IMF	글로벌	수록	국제기구 자료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a) 순ODA 비율, (b)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OECD	국무조정실	수록	공적개발원조통계	국내 제공자료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ODA 및 남남협력의 비율	OECD	국무조정실	미수록	공적개발원조통계	국내 제공자료
17.3.2	총 GDP 대비 송금액 비율	World Bank	한국은행	수록	국제기구 자료	IMF Balance of Payment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World Bank	해당 없음	미수록		개발도상국 대상 지표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UNCTAD	글로벌	미수록		
17.6.1	인구 1백 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속도별)	ITU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수록	ICT 주요 품목동향조사	국내 제공자료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 금액	UNESCO	미정	미수록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IT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록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국내 제공자료
17.9.1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 가치(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OECD	미정	미수록		개발도상국 대상 지표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ITC	글로벌	수록	국제기구 자료	ITC Market Access Map Data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	WTO/ITC/ UNCTAD	해당 없음	미수록		개발도상국 대상 지표
17.12.1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관세	ITC	글로벌	수록	국제기구 자료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World Bank	글로벌	미수록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UNEP	미정	미수록	비계량 자료	글로벌 메타 미확정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발도상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OECD	외교부	수록	GPEDC 자료	국내 제공자료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의수	OECD	외교부	미수록	GPEDC 자료	국내 제공자료
17.17.1	인프라에 투자한 민관협력 규모	World Bank	미정	미수록		글로벌 메타 미확정

지표	지표명	소관 국제기구	소관 부처	데이터 수록여부	자료원	비고
17.18.1	SDG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역량 지표	UNSD	통계청	미수록	미정	글로벌 메타 미확정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PARIS21	통계청	수록	비계량 자료	국내 제공자료
17.18.3	자금출처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는 국가통계계획이 있는 국가의 수	PARIS21	통계청	수록	비계량 자료	국내 제공자료
17.19.1	개발도상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PARIS21	해당 없음	수록		
17.19.2	a)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하였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UNSD	통계청	수록	국제기구 자료	

* 본 자료는 부처 현황조사 완료 시점(2020.6.20.)에 작성된 것으로 추후 부처 협의과정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데이터 수록 여부만 현행화함

Abstract

Study on data gap for SDG indicators and data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Youkang Chin, Youngshil Park

This study aims to review data availability of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draw plans for effectively monitoring and managing the SDG data at the national level. First step is to investigate data gap of the Korean data of the global SDG indicators which is currently disseminated in the UN's global SDG database. The analysis shows that out of total 247 indicators, about 54% of data are being reported. The data is more available in the Goal 3(Health), 7(Energy), and 15 (Land) while less in 5(Gender Equality), 11(Urban), and 14(Ocean). It is also found that 23 government departments are related to the SDGs indicators, which implies that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is required to effectively manage the SDG indicators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 way of making the data more available and reducing the data gap in three ways; 1) to provide alternative indicators, 2) to conduct surveys for data collection, and 3) to use innovative technology to produce data such as GIS. It also suggests to establish a government-wide formal consultation mechanism with concerned ministries to jointly managing and monitoring the progress of the indicators. The continued partnership between the civial society organizations and academia is also emphasized.

Key terms : SDG, data, monitoring, governance

집필진

- 진유강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주무관)
- 박영실 (통계청 사무관)

연구보고서 2020-01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인 쇄	2021년 4월 12일
발 행	2021년 4월 13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2733-412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통계청
통계개발원